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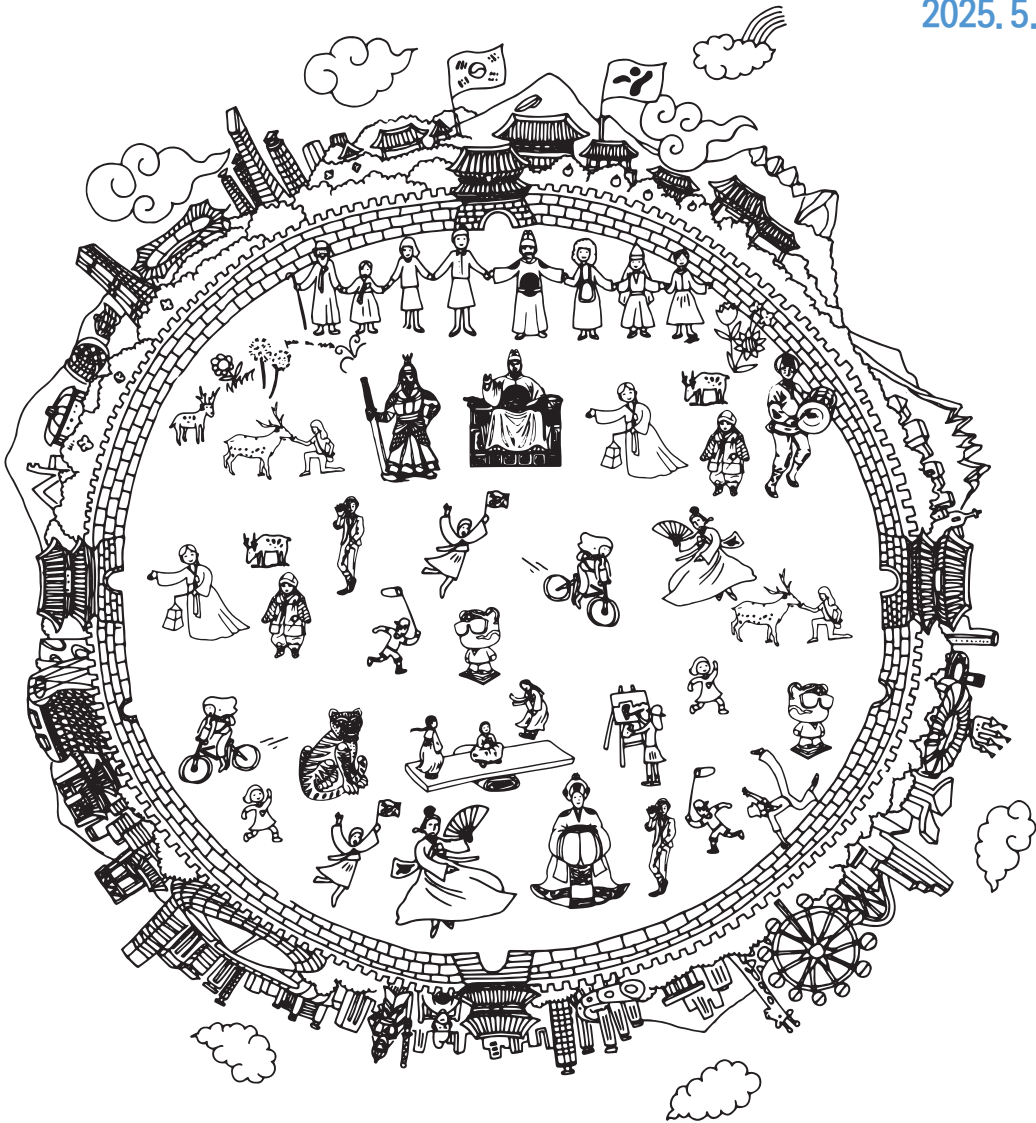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

서울시보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www.seoul.go.kr

제4064호
2025. 5. 19.(월)



목 차

◆ 자치법규 등

[조 례]

제9596호	서울특별시의회 전문도서관 운영 조례	4
제9597호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정책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8
제9598호	서울특별시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	13
제9599호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	18
제9600호	서울특별시의회 민원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1
제9601호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4
제9602호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6
제9603호	서울특별시 영어 및 창의마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	29
제9604호	서울특별시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	31
제9605호	서울특별시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	33
제9606호	서울특별시 부모학습 지원 조례 폐지조례	35
제9607호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37
제9608호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39
제9609호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	42
제9610호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45
제9611호	서울특별시 핀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47
제9612호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51
제9613호	서울특별시 반려동물 진료비 표시제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	53
제9614호	서울특별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일부개정조례	55
제9615호	서울특별시 야생조류 충돌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	57
제9616호	서울특별시 리버버스 운영과 환경친화적 선박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60
제9617호	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63
제9618호	서울특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65
제9619호	서울특별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67
제9620호	서울특별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69
제9621호	서울특별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71
제9622호	서울특별시 노후준비 지원 조례	73
제9623호	서울특별시 건강가정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76
제9624호	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79

제9625호	서울특별시 청년 장애 세대군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81
제9626호	서울특별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3
제9627호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85
제9628호	서울특별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87
제9629호	서울특별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89
제9630호	서울특별시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91
제9631호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94
제9632호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96
제9633호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98
제9634호	서울특별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	102
제9635호	서울특별시 서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04
제9636호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06
제9637호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	110
제9638호	서울특별시 집합건물 건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13
제9639호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15
제9640호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17
제9641호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	119
제9642호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22
제9643호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24
제9644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128
제9645호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131
제9646호	서울특별시 개인택시 및 개별·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33
제9647호	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35
제9648호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투자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37
제9649호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	142
제9650호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4
제9651호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6
제9652호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148
제9653호	서울특별시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52
제9654호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지털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55
제9655호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158
제9656호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60
제9657호	서울특별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62
제9658호	서울특별시 재활용품 수집·관리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166
제9659호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69

제9660호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	171
제9661호	서울특별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73
제9662호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5
제9663호	서울특별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	177
제9664호	서울특별시 전통문화 보존·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79
제9665호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	181
제9666호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183
제9667호	서울특별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85
제9668호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설립·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187
제9669호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89
제9670호	서울특별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193
제9671호	서울특별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95
제9672호	서울특별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97
제9673호	서울특별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99
제9674호	서울특별시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01
제9675호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03
제9676호	서울특별시 호스피스·완화의료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05
제9677호	서울특별시 재난안전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207
제9678호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12
제9679호	서울특별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214
제9680호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16
제9681호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18
제9682호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220
제9683호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222
제9684호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24
제9685호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26

◆ 서울특별시교육청

[입법예고]

제2025-169호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228
------------	--	-----

자치법규 등

[조 례]

◆ 서울특별시조례 제9596호

서울특별시의회 전문도서관 운영 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의회 전문도서관 운영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5년 5월 19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회 전문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의회 의정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시민에게 전문적인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서울특별시의회 전문도서관” (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이란 「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제4호에 따른 전문도서관으로서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원”이라 한다),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및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직원, 시민에게 지방의회 의정활동과 관련한 전문적인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도서관을 말한다.

2. “자료”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도서관자료를 말한다.

3. “도서관 서비스”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기능) 도서관은 의회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전문적인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자료의 선정·수집·정리·보존 및 관리
2. 수집 자료의 열람·대출
3. 전자도서관 구축 등 도서관 정보화
4. 국회도서관 및 다른 지방의회 도서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5. 전문정보 검색서비스 제공
6. 도서관 문화행사 개최
7. 그 밖에 도서관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사항

제4조(자료의 종류) 도서관은 의회 의정활동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수집·관리한다.

1. 국내외의 연구, 전문, 학습, 교양, 참고용 도서
2. 법령, 조례, 규칙 등 각종 법규 및 각 공공기관의 행정자료
3. 회귀도서, 고서, 향토자료 등 특수·귀중도서
4. 의회의 회의록, 공청회 및 토론회 자료, 연구보고서, 공무국외활동보고서 등 의정활동 간행물

5. 그 밖의 의정활동과 관련된 자료

제5조(자료의 제출) ①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각 실·담당관 및 전문위원실(이하 “부서”라 한다)은 의정활동 지원과 관련된 각종 자료가 발간된 경우 7일 이내에 해당 간행물을 3부 이상 도서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각 부서가 외부기관으로부터 받은 자료 중 도서관에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는 도서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자료의 관리) 도서관은 자료의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한국십진분류법에 따른 수집 자료 분류 및 정보화시스템 등록·관리
2. 자료 목록 작성 및 점검
3. 열람·대출자료의 훼손 또는 분실 여부 확인
4. 도난방지, 화재예방 등 안전대책 마련

제7조(자료의 교환·폐기 등) ① 사무처장은 소장자료의 효율적인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다른 도서관, 국가기관, 공공기관 등(이하 “도서관등”이라 한다)과 자료를 교환하거나 도서관등에 자료를 이관 또는 양도할 수 있다.

② 사무처장은 소장자료 중 이용가치가 상실되어 보존의 필요성이 없거나 분실·훼손 등으로 이용할 수 없게 된 자료가 있는 경우 이를 폐기 및 제적할 수 있다.

제8조(이용자의 범위) 도서관 이용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원
2. 전직 의원
3. 의회 또는 시 소속 직원
4. 그 밖에 학술연구 등의 목적으로 자료를 이용하려는 사람

제9조(열람 및 대출) ① 자료의 열람장소는 도서관으로 한정하며, 열람·대출시간은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에 따른 공무원의 근무시간으로 한다. 다만, 의회의 회기 중에는 의원 및 의회 소속 직원에 한정하여 열람·대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자료의 대출은 제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만 할 수 있다. 다만, 제8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무처장의 허가를 받아 대출할 수 있다.

제10조(열람 및 대출의 제한) 다음 각 호의 특수자료는 열람 및 대출할 수 없다. 다만, 의원이 의정활동에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에는 열람 및 대출할 수 있다.

1. 대외비 이상 보안 유지가 필요한 자료
2. 발행기관으로부터 제한 요청이 있는 자료
3. 귀중자료 및 고서, 고잡지 등 희귀자료
4. 시청각자료 등 훼손 또는 분실될 우려가 있는 자료
5. 그 밖에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제11조(반납) ① 자료를 대출한 사람은 대출기간 내에 자료를 반납하여야 하며, 반납하지 않은 자료가 있는 경우 다른 대출이 제한될 수 있다.

② 자료를 대출한 사람이 제8조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휴직·정직·전출·장기해외파견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자료를 반납하여야 한다.

③ 사무처장은 도서관의 관리 등에 필요한 경우에는 대출기간 경과 전이라도 자료의 반납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사무처장은 대출기간이 경과한 자료에 대하여 자료반납통지서를 발송하여 반납을 요구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반납 요구에도 불구하고 연체일이 1년을 초과한 미반납 자료는 분실 처리한다. 제12조(자료의 훼손·분실·연체에 따른 변상) ① 열람·대출 자료를 분실하거나 훼손한 사람은 동일 자료로 변상함을 원칙으로 하되, 동일 자료로 변상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체 자료 또는 그 자료에 상당한 가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② 제11조제4항에 따른 반납 요구에도 불구하고 반납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체에 따른 변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3조(도서관 서비스의 제공) 사무처장은 전문정보 검색서비스 제공, 도서관 문화행사 등을 통해 시민에게 열린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운영 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제정이유

- 서울특별시의회는 의원의 의정활동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시민에게 전문적인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의회에는 전문도서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체계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자료의 수집·관리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 일관된 운영이 어려운 실정임.
- 이에 따라 전문도서관의 설치 목적, 기능, 자료의 수집·관리, 이용자 범위 및 이용 방법 등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도서관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시민에게 전문도서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전문도서관의 정의 및 기능 규정(제2조 및 제3조)
- 나. 수집·관리 대상 자료의 종류 및 제출·관리 기준 마련(제4조, 제5조, 제6조)
- 다. 이용자의 범위, 열람 및 대출 기준, 제한 사유 등 도서관 이용에 관한 사항 규정(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 라. 시민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 제공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정비(제13조 및 제14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9597호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정책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5년 5월 19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정책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창의적 의견과 고안을 다양한 정책에 반영하고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여 서울특별시의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제안”이란 서울특별시 및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관 사무에 대한 개선 및 발전을 목적으로 제출된 창의적 의견과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법령·조례·규칙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으로 시민 편익 증진과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 발전에 기여하는 것
 - 나. 예산절감, 불합리한 규제개선 방안 등으로 의원의 효율적인 의정활동에 기여하는 것
 - 다. 내부지침, 업무 절차 등의 개선에 관한 사항으로 의회의 발전과 의원 의정활동 지원에 기여하는 것
 - 라. 그 밖에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
2. “공모전”이란 의장이 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우수정책제안을 공개 모집하고, 심사를 거쳐 수상자에게 상장 및 포상금 등을 수여하는 경진 대회 또는 이와 유사한 공모 대회를 말한다.
3. “채택제안”이란 의장이 공모를 통해 접수한 정책제안 중 심사를 통해 우수한 것으로 인정하여 채택, 시상한 것을 말한다.

제3조(의장의 책무 등) ① 의장은 공무원으로 하여금 정책제안제도 운영에 적극 참여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 ② 의장은 공무원의 정책제안 작성 및 발굴 등에 필요한 경우 의회 내에 보유하고 있는 시설·설비 또는 각종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제4조(정책제안의 공모)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기를 정해 정책제안 공모전을 개최할 수 있다.

1. 정책제안 부문 및 주제
2. 응모방법
3. 접수기간
4. 심사기준
5. 채택제안에 대한 사용 목적 및 범위

6. 채택제안에 대한 시상 내용
7. 그 밖에 정책제안 공모에 필요한 사항
- ② 공무원은 정책제안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출할 수 있다.
- ③ 공무원이 공동으로 정책제안을 제출하는 경우 참여한 사람 개개인의 기여도를 백분율로 표시하고 기여도가 가장 큰 사람을 주제안자로 표시하되, 기여도가 같은 경우에는 제안자 간의 합의로 주제안자 1명을 정하여야 한다.
- ④ 접수된 정책제안 중 그 내용이 같은 정책제안이 있는 경우 먼저 접수한 것이 우선한다.
- 제5조(우수정책제안상의 선정 및 시상) ① 의장은 정책제안 공모전을 통해 접수된 정책제안 중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정책제안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우수정책제안상 시상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1. 창의성
 2. 실현가능성
 3. 효율성 및 효과성
 4. 적용 범위
 5. 계속성
- ② 우수정책제안상의 시상 등급은 대상·최우수·우수·장려로 구분한다. 다만, 각 시상 등급에 적합한 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6조(부상 등) ① 의장은 우수정책제안상 수상자에게 상장 및 포상금 등의 부상과 특별휴가 등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상장 및 부상 수여는 「서울특별시의회 표창 조례」에 따르되,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의 포상금 지급액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 ③ 시상 후 타인의 공적사항 등을 제출하는 등 거짓된 방법으로 수상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의장은 시상을 취소하고 상장 및 포상금 등을 반환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제7조(우수정책제안상 선정 위원회) ① 의장은 공정한 우수정책제안상 선정을 위해 공모주제 관련 전문가, 의원, 공무원 등 15인 이내로 구성된 우수정책제안상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② 선정위원회는 필요할 때마다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해산한다.
- ③ 선정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그 밖에 선정위원회의 운영 및 세부 심사기준, 선정인원 등 우수정책제안상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정책제안의 관리) 의장은 채택제안에 대하여 분야별로 목록을 작성·관리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하여야 하며, 채택되지 아니한 정책제안에 대해서도 의정활동 지원에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성과의 평가) 의장은 채택제안의 실무 반영 및 의정활동에의 활용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그 성과를 업무 등의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 제10조(정책제안의 활용 및 공유) 의장은 채택제안 및 그 성과를 서울특별시 자치구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공유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우수정책제안상 포상금(제6조제2항 관련)

구 분	포 상 금
대 상	400만원 이상 800만원 이하
최 우 수	200만원 이상 400만원 이하
우 수	100만원 이상 200만원 이하
장 려	5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 포상금은 위 표의 범위 안에서 지급함.

<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제정이유

- 지방의회 전문성 강화와 함께 서울특별시의회 차원의 다양한 정책 발굴 및 집행기관과의 협력이 요청되고, 창의적 제안을 통한 의원 의정활동 지원 방법의 다양화 또한 요청되고 있음.
- 공무원의 적극행정 및 아이디어 제공을 통한 행정혁신 도모의 일환으로 서울특별시는 「서울특별시 서울창의상 운영 조례」를 통해 창의행정 구현을 위한 공무원 정책제안 제도를 운영하며, 타 지방의회에서도 의회 차원의 정책아이디어 공모제도를 도입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음.
-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현재, 서울특별시의회 역시 독자적으로 의회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책아이디어 제안 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통해 의정활동 지원 방안 다각화와 의회 차원의 정책 혁신을 도모할 필요성이 있음.
- 이에, 서울특별시의회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정책제안제도와 공모전 운영에 관해 규정해 소속공무원들이 창의적이고 혁신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의정활동혁신과 의회 발전에 기여한 직원에 대한 포상체계를 확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대해 규정함(제1조 및 제2조)
- 나. 정책제안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의장의 책무와 편의제공 근거를 규정함(제3조)
- 다. 정책제안 공모전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4조)
- 라. 우수정책제안상의 선정 및 시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제5조 및 제6조)
- 마. 우수정책제안상 선정 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7조)
- 바. 정책제안의 관리방법 및 의정활동에의 활용 성과,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공유에 관해 규정함(제8조 내지 제10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9598호

서울특별시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5년 5월 19일

서울특별시의회 표창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표창 추천권자가 의원인 경우, 임기 중 추천할 수 있는 건수의 상한은 의장이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른다.

제15조제1항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를 “다음 각 호 중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될 때에는 표창을 취소하며, 제3호에”로 하고 “할 수 있다.”를 “한다.”로 한다.

제16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표창수여 사실확인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에게 발급할 수 있다.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8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4호서식] 공적조서

공 적 조 서

(1) 성 명	(한자) (원명)												
(2) 생년월일						(3) 군번 (군인의 경우)							
(4) 등록기준 지(국적)													
(5) 주 소													
(6) 직 업						(7) 소 속							
(8) 직 위						(9) 등급(직급, 계급)					(10) 근무기간		
(11) 공적요지(50자내외)						(12) 공적분야 코드							
(13) 추천훈격	서울특별시의회의장					(14) 추천순위							
조 사 자													
(15) 소 속						(15) 직 위							
(17) 직 급						(18) 성 명	(인)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인)													

주요학력 및 경력

(19) 년 월 일	(20) 이 력	(21) 년 월 일	(22) 이 력

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23) 년 월 일	(24) 내 용	(25) 년 월 일	(26) 내 용

(27) 공 적 사 항

* 공적사항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를 사용하십시오

210mm×297mm[일반용지]

[별지 제8호서식]

위임장

■서울특별시의회 표창 조례 [별지 제8호서식]

위임장

위임하는 사람	이름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서울특별시의회 표창 조례」 제16조에 따라 아래 사람에게 본인의 표창수여 사실확인서 수령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합니다.

위임받는 사람	이름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위임하는 사람과의 관계	전화번호
	주소	

년 월 일

위임하는 사람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의회의장 귀하

유의사항

1. 위임받는 사람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을 제시해야 합니다.
2. 민원사항(출입국사실증명,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납세증명, 지방세 납세증명 등)에 따라서는 위임하는 사람과 위임받는 사람의 신분증 사본을 구비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3. 다른 사람의 인장 도용 등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형법」 제231조와 제232조에 따라 사문서 위조·변조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표창의 위상을 강화하고 권위 향상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여 표창 제도 운영의 규범력 강화하고자 함.
- 표창 추천 건수 상한 기준을 정하는 근거를 신설하여 의원 간 형평성 확보하고,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포상을 받은 자에 대한 표창 취소를 재량이 아닌 당연 취소로 개정하여 포상 대상자의 적격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의원이 추천하는 표창 추천 건수의 상한 기준을 의장이 정할 수 있도록 신설함(제11조제4항).
- 나.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포상을 받은 자에 대한 표창 취소를 재량이 아닌 당연 취소로 개정함(제15조).
- 다. 공적조서 서식 내 추천 훈격 항목을 '서울특별시의회의장'으로 개정함(별지 제4호서식).
- 라. 대리인이 표창수여 사실확인서 발급 신청시 첨부하도록 되어 있는 위임장 서식을 신설함(별지 제8호서식).

◆ 서울특별시조례 제9599호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5년 5월 19일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한” 을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100일, 한”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7항 본문 중 “제15항에” 를 “제16항에” 로, “제15항제1호” 를 “제16항제1호” 로 한다.

별표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배우자 출산에 따른 경조사 휴가일수에 관한 적용례) 별표5의 배우자 출산 휴가일수에 관한 개정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한 휴가 일수는 별표5의 개정규정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휴가 일수에서 뺀다.

1.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제35259호, 시행 2025. 2. 11.)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배우자 출산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사용한 공무원으로서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에 따른 사용기한이 남아있는 공무원
2.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제35259호, 시행 2025. 2. 11.)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배우자 출산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사용 중인 공무원

[별표5]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29조제1항 관련)

구분	대 상	일수
결혼	본인	5
	자녀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출산	배우자	20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25일)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	1
입양	본인	20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5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비고 : 배우자 출산에 따른 경조사휴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80일 이내의 범위에서 5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 가능함.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2025년 2월 11일 개정 시행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반영하고, 배우자 출산휴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출산휴가의 사용기한과 분할사용 가능 횟수를 확대하여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100일을 추가함. (제29조(특별휴가) 제2항)
- 나. 제17항 본문 중 “제15항에”를 “제16항에”로 변경함. (제29조(특별휴가) 제17항)
- 다. 배우자 출산휴가의 사용 일수를 10일에서 20일로,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 15일에서 25일로 변경함. (별표 5)
- 라. 배우자 출산휴가의 분할 사용 가능 횟수를 5회, 사용기한을 180일 이내로 규정함. (별표 5)

◆ 서울특별시조례 제9600호

서울특별시의회 민원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의회 민원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5년 5월 19일

서울특별시의회 민원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를 제15조로 하고,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시민권익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의장은 의회에 제출되는 민원의 전문적인 처리로 시민의 권익 보호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는 서울특별시의회 시민권익위원회(이하 “시민권익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1. 의회 민원처리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의회신문고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및 서울특별시 교육청(이하 “시 교육청”이라 한다)의 민원현황에 관한 분석 사항
 4. 민원 현장조사 운영 등에 관한 사항
 5. 시 및 시 교육청의 주요 시책사업에 대한 민원 대응에 관한 사항
 6. 민원 관련 법·자치법규 등의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원장이 민원 처리와 시민 권익 보호·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시민권익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의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부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각 1명
 2.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각 1명
 3. 교섭단체 대표가 추천하는 의원 각 1명
 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원 또는 분야별 민원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 ③ 위원장은 의원인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의원과 외부 전문가 각각 1명을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 ④ 시민권익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현장민원담당관이 된다.

제12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궐위로 인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시민권익위원회를 대표하며 시민권익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원인 부위원장과 외부 전문가 부위원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의원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시민권익위원회의 운영) ① 시민권익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2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는 각 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이 경우 회의는 회기를 정하여 개최할 수 있다.

1. 재적위원 3분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2. 의장의 소집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민권익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할 경우 시민권익위원회의 의결로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④ 시민권익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그 밖의 이해 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시민권익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현장을 방문하거나 전문기관 또는 단체, 전문가 등에게 조사 또는 연구 등을 의뢰 할 수 있다.

⑥ 시민권익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에 위원회 활동 지원부서를 둔다.

⑦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민권익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의 방대하고 복잡한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다양한 민원을 처리하고, 시민의 권익 보호와 증진을 위해서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됨.
- 이에 서울특별시의회의 민원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며, 제도 개선을 도모할 수 있도록 각 민원 분야별 전문가들과의 협력적 네트워크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시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을 규정함(제11조)
- 나. 시민권익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규정함(제12조)
- 다. 위원의 임기와 위원장 등의 직무를 규정함(제12조 및 제13조)
- 라. 시민권익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4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9601호**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5년 5월 19일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을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인의 특이민원”으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그 치유와 피해회복을 지원하는 것”을 “피해의 예방과 치유 및 피해 회복을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근무 환경 조성”으로 한다.

제2조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폭언·폭행 등 이란”을 ““특이민원” 이란”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여러 차례 지속적”을 “3회 이상 반복적”으로 하고, 같은 호에 마목 및 바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마. 정당한 사유 없이 장시간의 통화 및 민원상담으로 다른 민원 처리를 지연시키는 행위
- 바. 집기·물품파손 및 점거행위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폭언·폭행 등”을 각각 “특이민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폭언·폭행”을 “특이민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전단 중 “민원인이 반복적·지속적으로 폭언·폭행 등을 한”을 “민원인의 반복적·지속적인 특이민원이 발생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폭언·폭행 등”을 “특이민원”으로 한다.

제7조제2호 중 “폭행·폭언 등”을 “특이민원”으로, “증거 수집”을 “사전예방 및 사후 입증자료 확보”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폭언·폭행 등”을 “특이민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민·형사상”을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으로 한다.

1. 진료비, 약제비 등 치료에 필요한 의료비
2. 심리상담 및 예방 또는 치유를 위한 프로그램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폭언·폭행 등”을 “특이민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폭언·폭행 등”을 “특이민원 중”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폭언·폭행 등”을 “특이민원”으로 한다.

제10조 중 “민원인으로부터의 폭언·폭행 등”을 “민원인으로부터 특이민원”으로 한다.

제12조제3호 중 “폭언·폭행 등”을 “특이민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특이민원’ 정의 조항을 신설하고, 반복 민원, 장시간 통화, 집기 파손 행위 등 구체적인 유형을 명시함으로써 대응의 객관성과 실효성을 높이하고자 함.
- 또한 피해 공무원 지원 항목을 구체화하여 회복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폭언·폭행 등” 용어를 “특이민원” 으로 정비하고, 피해 예방과 회복을 포함하는 조례 목적을 명확히 함. (제1조)
- 나. “특이민원” 의 정의를 신설하고, 반복 민원, 장시간 통화, 점거행위 등 구체 유형을 명시하여 기준 용어를 명확히 함. (제2조제5호)
- 다. 피해 공무원에 대한 구체적 지원 항목을 신설하고, 심리상담·민형사상 대응 조항을 명확히 함. (제8조1항)

◆ 서울특별시조례 제9602호

서울특별시회의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회의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5년 5월 19일

서울특별시회의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회의의장” 을 “서울특별시회의의장(이하 “의장” 이라 한다)”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외여비, 관내출장여비” 를 “국외여비” 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여비의 지급기준은 국내여비는 별표 3, 국외여비는 별표 4와 같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여비지급 제한 및 가산징수 등) ① 공무 여행 중 공무용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일비의 2분의 1을 지급한다.

② 의장은 의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았을 때에는 부정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제6조제2항 중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월정수당은” 을 “의정활동비, 월정수당의” 로 하고, “감액한다.” 를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로 한다.

제6조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중전의 제3항) 중 “제1항과 제2항” 을 “제1항 내지 제4항” 으로 하며 “월정수당, 여비를” 을 “월정수당을” 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유로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월정수당은 2분의 1을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를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④ 의원이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유로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및 사과의 징계를 받은 경우,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의 의정활동비를 2분의 1 범위내에서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별표 3 중 “(제5조제1항 관련)” 을 “(제4조제3항 관련)” 으로 한다.

별표 3 비고 제1호 중 “서울특별시내에서의” 를 “서울특별시 내에서의 여행 또는” 으로, “일

비와 식비만”을 “일비만”으로 한다.
별표 4 중 “(제5조제1항 관련)”을 “(제4조제3항 관련)”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의회에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예산낭비 방지 방안’ (’ 22.12.26.)과, ‘17개 광역자치단체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 23.7.25.)를 통해 지방의원 여비제도 개선 및 징계에 따른 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에 관한 사항을 권고하였음.
- 이에, 이들 권고 사항을 적시에 도입하여 시민의 서울특별시의회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키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지방의원의 공무로 인한 국내 여행 중 근무지 내 출장에 지급되는 여비를 일비로 제한함(제4조 및 별표3).
- 나. 공무용 차량 이용 시의 일비 감액 규정을 정비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수령한 경우의 가산징수 근거를 마련함(제5조).
- 다. 본회의 또는 위원회 회의장 질서 위반에 따른 출석정지 징계시의 의정활동비 등 수당 지급 제한 규정을 신설함(제6조제3항).
- 라. 본회의 또는 위원회 회의장 질서 위반에 따른 공개사과 및 경고 징계시의 의정활동비 등 수당 감액 지급 규정을 신설함(제6조제4항).

◆ 서울특별시조례 제9603호

서울특별시 영어 및 창의마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영어 및 창의마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5년 5월 19일

서울특별시 영어 및 창의마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폐지이유와 주요내용 >

1. 폐지이유

- 서울특별시는 영어교육 및 창의적 학습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영어마을을 운영해왔으나, 시대적 변화와 교육정책 방향의 전환에 따라 기존 영어마을의 운영을 종료하고, 해당 시설의 기능을 다른 사업으로 전환하였음.
- 영어마을의 운영이 종료되고 기존 시설이 새로운 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해당 조례를 유지할 실익이 없으며, 불필요한 조례를 정비하는 것이 행정적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이라 할 수 있음. 다만, 본 폐지조례안의 시행 시점을 2026년 1월 1일로 명시함으로써 2025년 예산편성과 관련한 행정적 정비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음.

2. 주요내용

- 가. 서울특별시 영어 및 창의마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 서울특별시조례 제9604호

서울특별시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5년 5월 19일

서울특별시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폐지이유와 주요내용 > —

1. 폐지이유

-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지원사업은 2023년 1월부로 종료되었으며, 서울시와 자치구 교육지원협력사업 역시 2025년 폐지가 확정되어 조례의 존속 필요성이 사라졌음.
- 조례가 유지될 경우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관련 규정이 남아 있어 행정적 혼선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조례를 폐지함으로써 법령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2. 주요내용

- 가. 서울특별시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 서울특별시조례 제9605호

서울특별시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5년 5월 19일

서울특별시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폐지이유와 주요내용 >

1. 폐지이유

- 서울특별시는 도농 간 상생을 도모하고 공공급식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운영해왔으나, 자치구-산지 1:1 매칭에 따른 구조적 문제점, 어린이집-유치원 간 식재료 안전성 관리 편차 등 해결을 위하여 ' 24. 1월, 서울친환경유통센터를 통해 식재료를 공급하는 「서울든든급식」으로 공급체계를 개편하였음.
- 현재 공공급식 개편에 따른 추진 근거가 「서울특별시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됨에 따라, 본 조례를 유지할 실익이 없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서울특별시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 서울특별시조례 제9606호

서울특별시 부모학습 지원 조례 폐지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부모학습 지원 조례 폐지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5년 5월 19일

서울특별시 부모학습 지원 조례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폐지이유와 주요내용 >

1. 폐지이유

- 「서울특별시 부모학습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해왔으나, 현재 부모교육은 가족담당관 소관의 가족센터를 통해 생애주기별로 체계적으로 제공되고 있음.
- 가족담당관에서는 이미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서울시 건강가정 지원 조례」를 운영 중이며, 해당 조례 내에서 부모교육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어 「부모학습 지원 조례」의 기능을 가족담당관으로 이관하는 것은 불필요 함.
-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부모학습 지원 조례」를 유지하는 것은 행정적 중복을 초래하며 실질적인 효용성이 부족하여 본 폐지조례안을 통해 조례 체계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서울특별시 부모학습 지원 조례 폐지

◆ 서울특별시조례 제9607호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5년 5월 19일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및 제24조를 각각 제24조 및 제25조로 하고,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포상 등) 시장은 자체감사활동 등을 통해 근무기강 확립에 크게 기여하거나 자율적 내부 통제 운영 실적 등이 우수한 감사대상기관 및 소속 직원에 대하여 표창 및 포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

1. 개정이유

-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및 각종 비리 사전 예방 등을 위하여 추진하는 감사활동 우수기관 포상 제도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자체감사활동 등을 통해 근무기강 확립에 크게 기여하거나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 실적 등이 우수한 감사대상기관 및 소속 직원에 대하여 표창 및 포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제23조 신설).

◆ 서울특별시조례 제9608호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5년 5월 19일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속하”를 “소속 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감사위원회내”를 “감사위원회 내”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를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로 한다.

제7조의 조제목 중 “회의”를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분기로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시”를 “분기별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동의로서 임시”를 “동의를 받아 임시 회의를”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관계된”을 “관련된”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익제보할”을 “공익제보를 할”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후단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보할 수 있으며, 시민단체를 통해 공익제보를 하더라도 차별하지 않는다.

제8조제2항제1호 중 후단을 단서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익명을 원할 때에는 변호사가 이를 대리하여 접수할 수 있으며, 시는 공익제보자에 대한 별도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도 변호사와 협의해야 한다.

제10조제4항 중 “받으면”을 “받은 경우에는”으로,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6항제1호 본문 중 “해고, 그 밖에”를 “해고 등”으로, “신분상의 불이익조치를 받았을 경우 월평균액의”를 “불이익 조치를 받은 경우 평균 임금의 2배를 넘지 않는 월평균액”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월평균액은 평균임금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하며, 지급”을 “지급”으로 한다.

⑤ 시는 구조금을 지급한 경우, 지급한 금액 범위 내에서 구조금을 받은 사람이 제1항에 따른 피해나 비용 지출로 인해 갖는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위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단, 공익신고의 경우”를 “다만, 공익신고의 경우에는”

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지급하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지급하며”로, “아니 한다”를 “않는다”로 하며, 같은 항 후단을 단서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보상금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으며, 산정된 보상금의 천원 미만 단위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11조제4항 중 “대하여”를 “대해서”로, “아니할”을 “않을”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예외로 한다”로 한다.

제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재정상”을 “재정에”로,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을 “공익을 증진시킨”으로 하고, 후단 중 “다만”을 “다만,”으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공익제보센터의 설치 운영)”을 “(공익제보센터의 설치·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공익제보센터”를 “센터”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공익제보를 접수·처리함에 있어 시에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이 있는 경우에는 시가 조사 조치하며, 관계 기관에서 처리할 사안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이첩하고 그 사실을 공익제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관계기관 이첩 시, 신고의 내용과 대상이 해당 기관의 공익제보 조사·처리 부서와 관련이 있어 제9조에 따른 공익제보자의 보호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전 협의를 통해 특정부서를 따로 정하여 이첩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는 관계 기관 내 별도의 조사팀을 구성하여 조사하도록 이첩 의견을 첨부할 수 있다.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호제도에 대한”을 “보호제도의 활성화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공익제보자 보호제도 및 안심번호사 대리 신고 제도 관련 홍보물 제작·배포 등 시민 안내 강화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현행 조례 제13조는 시 사무와 관련이 없는 공익제보의 경우 조사의견을 첨부하여 관계 기관에 이첩하고 그 처리사항까지 확인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그러나, 소관 아닌 모든 사안에 대해서 서울시가 조사의견을 작성·첨부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업무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 강제하는 측면이 있고, 원칙적으로 이관받은 기관이 자체 판단에 따라 조사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인 바, 이에 강행규정을 완화하고 소관 기관에서 조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정비하고자 함.
- 또한, 시에 접수되는 공익제보는 직접처리, 이송, 종결 등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기각’ 개념은 실제 적용하고 있지 않음. 따라서, 제13조제4항의 ‘기각’ 과 관련된 규정을 삭제하여 업무의 혼선을 방지하고 공익제보 처리 절차를 명확히 하고자 함.
- 아울러, 공익제보를 관계기관에 이첩할 때, 예컨대 피신고자가 자치구 감사담당관 소속인 경우 등은 신고 내용이 이해관계자에게 직접 노출될 우려가 있음. 이에 해당 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특정부서로 이송하도록 변경함으로써 제보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신고 내용의 비밀보장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상금 지급기준에 맞춰서 조례 내용도 수정함(제11조제3항).
- 나. 시 소관 사무에 해당하지 않는 공익제보를 타 기관에 이첩 시, 조사의견을 첨부하고 처리결과를 확인하도록 한 의무 규정, 공익제보 중 기각 사항을 시장에게 월별 보고하도록 한 규정 삭제(제13조제4항)
- 다. 공익제보 내용이 이첩 기관의 공익제보 처리 부서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과 사전 협의를 통해 특정부서로 이송하는 임의규정 신설(제13조제5항)
- 라.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한 안심변호사 대리신고 제도 관련 홍보 강화규정 신설(제21조제3호)
- 마. 그 밖에 입법 형식에 맞지 않는 조문들을 수정하고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어색하거나 복잡한 문장 또는 용어를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정비함.

◆ 서울특별시조례 제9609호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5년 5월 19일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한” 을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100일, 한”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6항 본문 중 “제14항에” 를 “제15항에” 로, “제14항제1호” 를 “제15항제1호” 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배우자 출산에 따른 경조사 휴가일수에 관한 적용례) 별표3의 배우자 출산 휴가일수에 관한 개정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한 휴가 일수는 별표3의 개정규정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휴가 일수에서 뺀다.

1.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제35259호, 시행 2025. 2. 11.)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배우자 출산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사용한 공무원으로서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에 따른 사용기한이 남아있는 공무원
2.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제35259호, 시행 2025. 2. 11.)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배우자 출산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사용 중인 공무원

[별표 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24조제1항 관련)

구분	대 상	일수
결혼	본인	5
	자녀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출산	배우자	20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25일)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	1
입양	본인	20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5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비고 : 배우자 출산에 따른 경조사휴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80일 이내의 범위에서 5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 가능함.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2025년 2월 11일 개정 시행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은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에서 20일(둘 이상 자녀를 출산한 경우 15일에서 25일)로 확대하였고, 미숙아 출산 시 출산휴가 100일 사용하도록 신규로 추가함.
- 또한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에는 배우자 출산휴가는 그 사유(출산)가 발생한 날부터 120일(다태아 150일) 이내 범위에서 3회(다태아 5회) 분할사용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 서울시 업무 특성상 매년 하반기에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로 업무가 몰려있어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는데 120일 이내에 3회 분할사용 하는 것은 다소 어려움이 있음.
-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에서 배우자 출산휴가의 사용기한을 정하고 있지만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는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의 제정과 관련하여 별도의 명시적인 수권규정이 존재하고 있지 않아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는 대외적 효력이 없는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정한 일반적인 ‘행정규칙’으로 보여짐.
- 또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 제1항에서는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이에 새롭게 개정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반영하고, 배우자 출산휴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출산휴가의 사용기한과 분할사용 가능 횟수를 확대하여 규정하고자 함.
- 추가로 출산휴가의 목적 등을 고려하여,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기한을 현행 120일 이내에서 180일 이내로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100일을 추가한다. (제24조(특별휴가) 제2항)
- 나.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기한을 사유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서 ‘180일 이내’로 수정함. (별표 3의 비교)
- 다. 배우자 출산휴가의 사용 일수를 10일에서 20일로,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 15일에서 25일로 변경한다. (별표 3).
- 라. 배우자 출산휴가의 분할 사용 가능 횟수를 5회, 사용기한을 1년 이내로 규정함. (별표 3)

◆ 서울특별시조례 제9610호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5년 5월 19일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4(이용자 안전조치) ①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평생교육기관의 보험가입 또는 공제사업에의 가입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1. 1인당 배상금액 1억원 이상
2. 1사고당 배상금액 10억원 이상

②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 및 운영자는 시설 이용자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상의 손해가 있을 경우 보상받을 수 있도록 신속히 조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평생교육법」 제28조제3항에서는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가 시설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에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조항이 부재함.
-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내 평생교육기관의 시설 이용자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보험 가입 및 사고 발생 시 보상조치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이용자 안전조치에 관한 조항 신설(제5조의4)

◆ 서울특별시조례 제9611호

서울특별시 핀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핀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5년 5월 19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 핀테크산업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핀테크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핀테크산업”이란 정보통신기술, 그 밖의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금융산업의 혁신을 유도하는 신기술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2. “핀테크기업”이란 핀테크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핀테크산업의 지속적인 성장·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핀테크산업 육성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핀테크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핀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핀테크산업 육성의 지원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
2. 핀테크기업 발굴 및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3. 핀테크산업 관련 규제 개선 건의에 관한 사항
4. 핀테크산업 행사와 기술개발·연구사업 등의 수립에 관한 사항
5. 핀테크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핀테크산업의 육성 등) 시장은 핀테크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핀테크산업 시장 및 관련 기술의 조사·분석과 수집정보의 제공

2. 핀테크산업과 관련된 창업·경영에 관련된 상담·교육 및 정보 제공
3. 핀테크산업 진흥을 위한 기술개발에 대한 지원
4. 핀테크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등에 관한 사항
5. 국내외 박람회 및 기술 경연대회 지원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핀테크기업에 대한 지원 등) 시장은 핀테크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융자하는 중소기업 육성기금
2.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
3. 금융규제 관련 컨설팅 및 법률 지원
4. 국내외 투자유치 및 해외진출 지원
5. 핀테크산업 관련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지원
6.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지원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핀테크산업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핀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과 관련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주요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핀테크산업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성과와 실적에 대한 평가
3. 그 밖에 핀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핀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 업무 담당 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서울특별시의회가 추천하는 서울특별시의원
2. 핀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과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 그 밖에 자문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본문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

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10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핀테크산업의 육성 및 지원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본 조례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 있는 공공기관 또는 기관·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1조(표창) 시장은 핀테크기업의 육성이나 산업의 진흥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제정이유

- 금융과 정보기술의 융합을 통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핀테크산업은 소비자에게 보다 저렴한 금융상품을 제공하고 금융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금융산업의 경쟁을 촉진하는 신성장동력으로 작용하고있음.
- 서울시의 경우 글로벌 금융허브로서의 위상을 바탕으로 국내 핀테크 중심지로 부상했지만 상대적으로 글로벌 핀테크 허브로서의 역할은 부족해 핀테크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가 필요한 상황임.
- 이에 핀테크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유망한 국내 핀테크기업의 발굴과 육성을 지원함으로써 서울시 핀테크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핀테크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용어의 정의와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제2조 및 제3조).
- 나. 핀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규정함(제5조).
- 다. 핀테크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을 규정함(제6조).
- 라. 핀테크기업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제7조).
- 마. 핀테크산업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하여 규정함(제8조 및 제9조).
- 바. 핀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무의 위탁에 대하여 규정함(제10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9612호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5년 5월 19일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보험료의 지원

제10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의3(영세 소상공인 보험료 지원) 시장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각각 지원할 수 있다.

[별표] 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면 모든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해야 하나 2021년 기준 중소기업 사업주의 가입률은 0.62%에 불과하며, 특히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산업재해 발생 비율이 높은 실정이나 소상공인은 보험료 부담으로 인해 본인 또는 가족의 산재보험 가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이에 정부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소상공인의 산재보험 가입 시 보험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나,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소상공인에 대한 산재보험료 지원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여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제8조제8호 신설).
- 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 대하여 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제10조의3).
- 다.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 신청시 요구되는 서식을 삭제함(별표).

◆ 서울특별시조례 제9613호

서울특별시 반려동물 진료비 표시제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반려동물 진료비 표시제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5년 5월 19일

서울특별시 반려동물 진료비 표시제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폐지이유와 주요내용 > —

1. 폐지이유

가. 「수의사법」에 따라 반려동물 진료비용 게시가 의무 사항이 되었으므로 자율적으로 진료비를 표시하는 경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서울특별시 반려동물 진료비 표시제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

◆ 서울특별시조례 제9614호

서울특별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5년 5월 19일

서울특별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체육시설”을 “체육시설, 청소년시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가. 청소년시설에서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실천하도록 함으로써 이를 주로 이용하는 청소년들에게 1회용품 사용의 문제점을 환기시키고 미래 환경을 위한 교육적 의미를 찾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1회용품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공공기관 설립·운영 시설에 청소년 시설을 추가함(제6조 제3항)

◆ 서울특별시조례 제9615호

서울특별시 야생조류 충돌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야생조류 충돌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5년 5월 19일

서울특별시 야생조류 충돌 방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최소화하고 인간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건전한 생태환경을 조성함”으로 한다.

제5조를 제4조로 하고, 제4조를 제5조로 한다.

제6조부터 제8조까지를 각각 제7조부터 제9조까지로 하고,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일반 건축물 등에 대한 권고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건축주 또는 소유주, 관리자 등(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제5조제1항 각 호의 야생조류 충돌 예방 및 저감사업을 실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야생조류의 충돌이 예상되는 외벽이 유리창으로 되어 있는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가 자본금의 50퍼센트 이상을 출자·출연한 기관이 관리하는 건축물이나 시설물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야생조류 충돌 저감사업을 실시하는 건축주등에게 야생조류가 충돌을 회피할 수 있는 건축디자인을 안내할 수 있다.

제4조(중전의 제5조)제1항 중 “시장은 시”를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로 한다.

제5조(중전의 제4조)의 제목 “(충돌 방지 대책)”을 “(야생조류 충돌 방지 대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시장은 건축물, 방음벽 등 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조류 충돌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소관 인공구조물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야생조류 충돌 예방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는 건축주 또는 소유주, 관리자 등에게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가. 국내 야생조류가 건축물 유리창 및 투명방음벽에 충돌해 폐사·부상당하는 피해가 연간 약 800만 마리로 추정(국립생태원, 2018년)될 만큼 피해가 큼
- 나. 특히, 이 가운데 건물 유리창 폐사가 765만마리, 투명방음벽에 의한 조류 피해는 약 23만 마리로 추정되고 있어 이에 대한 충돌 방지사업 대책 강화가 요구됨
- 다. 올해 초부터 서울시에서 조류 충돌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야생동물 충돌 방지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바, 이에 대한 사항을 일부 조항 개정을 통해, 향후 인간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야생조류 충돌 방지를 위한 인간과 공존 모색 관련 정의 조항을 규정(제1조)
- 나. 야생조류 충돌 예방을 위한 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명시(제5조)
- 다. 일반 건축물 등에 야생조류 충돌 예방 및 저감사업 실시에 관한 사항 규정(제6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9616호

**서울특별시 리버버스 운영과 환경친화적 선박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리버버스 운영과 환경친화적 선박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5년 5월 19일

서울특별시 리버버스 운영과 환경친화적 선박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리버버스 운영과 환경친화적 선박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한강버스 운영과 환경친화적 선박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용기 상태 점검 등을 통하여 선박의 안전을”을 “탱크 및 배터리 상태 등을 포함한 선박의 안전상태를”로 한다.

제9조 중 “4월”을 “3월”로 한다.

제16조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운항요금 관련 사항

제17조제1항 중 “7명”을 “1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한강”을 “재정기획관, 한강”으로 한다.

제2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리버버스 운영과 관련한세부사항”을 “한강버스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업무협약에 경미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그 주요 내용을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리버버스”를 “한강버스”로 한다.

제2조제1호, 제2조제2호, 제2조제3호 및 제2조제4호 중 “리버버스”를 각각 “한강버스”로 한다.

제3조제1항, 제3조제2항 및 제3조제3항 중 “리버버스”를 각각 “한강버스”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리버버스”를 “한강버스”로 한다.

제5조 제목 및 제5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리버버스”를 “한강버스”로 한다.

제6조제1항제4호 중 “리버버스”를 “한강버스”로 한다.

제7조제1항 및 제7조제5항제1호 중 “리버버스”를 “한강버스”로 한다.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8조제1항제2호 중 “리버버스”를 “한강버스”로 한다.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6조제4호 중 “리버버스”를 “한강버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가. 2024년 7월 시민공모를 통해 “리버버스”의 명칭이 “한강버스”로 결정되었으나, 현재까지 명칭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아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 나. 제328회 임시회 “한강버스 운영사업 업무협약 동의안” 심사 당시의 지적 사항을 반영하여 회계감사 제출 시기를 조정하고 친환경선박 배터리의 안전 점검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위원회를 통한 요금 결정 및 위원회 구성 확대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 다. 업무협약 변경 사항 발생 시 그 내용을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 제목 및 조문 내 ‘리버버스’ 부분을 ‘한강버스’로 변경
- 나. 사업자의 안전 운행을 위한 선박 상태 점검내용에 친환경선박의 배터리 상태 점검을 포함한 전반적인 상태 점검 명시(제7조제3항)
- 다. 매년 회계감사 결과 보고 시기를 4월에서 3월로 변경(제9조)
- 라. 위원회 심의사항에 운항요금에 관한 사항을 추가(제16조제4호)
- 마. 위원회 구성을 7명 이내에서 10명 이내로 위원에 재정기획관을 추가(제17조제1항 및 제3항)
- 바. ‘운영과 관련한세부사항’을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으로 오기 정정(제22조제1항)
- 사. 협약에 경미한 변경사항 발생 시 그 내용을 소관 상임위에 보고(제22조제2항)

◆ 서울특별시조례 제9617호

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5년 5월 19일

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관리”란 서울로의 시설물, 식물, 화분 등을 유지·보수하고, 이를 통해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식물 및 화분 관리) 시장은 서울로에 식재된 식물의 건강한 생육과 화분의 안전하고 쾌적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식물 생육상태 정기점검 및 환경개선
2. 화분 시설 정기점검 및 시설정비
3. 계절별 유지관리

제12조제1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화분을 훼손하거나, 화분 내에 쓰레기를 투기하는 행위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

1. 개정이유

가. 서울로 7017의 식물 성장에 따른 화분 균열, 식재기반 보완 등 관리 강화가 요구되고 있는바, 식물 및 화분에 관리, 화분 훼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서울로 7017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서울로 7017의 관리에 관한 정의를 신설함(제2조제3호)

나. 서울로 7017의 식물 및 화분 관리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제5조의2)

다. 서울로 7017의 행위에 제한에 화분 훼손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제12조제6호)

◆ 서울특별시조례 제9618호

서울특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5년 5월 19일

서울특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3(전자 영수증 사용 활성화) ① 시장은 탄소중립 및 에너지 절약 실천을 위하여 시민과 기업이 종이 영수증 사용을 줄이고 전자 영수증 사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전자 영수증 사용 활성화에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과 교육·홍보를 추진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

1. 개정이유

- 가. 시민과 기업 등이 종이 영수증 사용을 줄이고, 전자 영수증 사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시의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함께 교육·홍보 의무를 부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전자 영수증 사용 활성화 지원 규정 신설(제24조의3)

◆ **서울특별시조례 제9619호**

서울특별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5년 5월 19일

서울특별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시민정원사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1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정원관련”을 “정원 관련”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시민정원사 인증서를 수여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시민정원사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통합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민정원사가 시에서 주최하는 정원 관련 사업에 참여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제2항제1호 중 “정원관련”을 “정원 관련”으로 한다.

제22조의 제목 “(포상)”을 “(표창)”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을 “표창”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시민정원사로서 적극적으로 활동하여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사람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는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

1. 개정이유

- 가. 시민정원사 인증서를 수여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시에서 통합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정원박람회 등 사업에 참여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나. 시민정원사로서 적극적으로 활동하여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사람에게 「서울특별시 표창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도록 함

2. 주요내용

- 가. 시민정원사 인증서를 수여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시에서 통합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제17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 나. 시민정원사로서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사람에게 표창하도록 함(제22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 서울특별시조례 제9620호

**서울특별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5년 5월 19일

서울특별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서울특별시는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효율적인 민원 처리와 지역정보화 활성화를 위하여 전자우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그러나 공공기관의 이메일 서비스 운영은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문제의 위험을 수반하며, 민간에서 제공하는 전자우편 서비스가 좀 더 편리하고 효과적으로 활용되고 있어 서울특별시가 자체적으로 전자우편 서비스를 운영할 필요성은 낮아 보임.
- 이에 따라, 조례상의 전자우편 서비스 제공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전자우편 서비스 제공 조항을 삭제함(제9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9621호

서울특별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5년 5월 19일

서울특별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하되,” 를 “하되, 2차례” 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현 임기 중 시정홍보에 탁월한 업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그동안 서울시는 시정의 효율적인 홍보와 시 이미지 제고를 위한 차원에서 홍보대사를 무보수 명예직으로 위촉하여 운영해 왔음. 서울시 홍보대사는 2년의 임기 동안 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 시정홍보 및 투자유치에 관한 활동, 문화 관광 활성화에 관한 활동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됨.
- 그러나 2025년 2월 기준, 서울시가 최근 5개년간 위촉한 52팀의 홍보대사 중에는 서울시 홍보 실적이 전무함에도 불구하고 수차례 연임되는 경우가 있는 등 서울시 홍보대사 연임 여부 결정에 대한 공정성 논란의 여지가 있음.
- 이에 특별한 홍보성과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홍보대사의 연임은 최대 2차례까지 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여 서울시 홍보대사의 무분별한 연임 관행을 방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홍보대사 연임 가능 횟수를 2차례로 규정(제3조 제3항)

◆ 서울특별시조례 제9622호

서울특별시 노후준비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노후준비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5년 5월 19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후준비 지원법」에 따라 시민의 노후준비 지원을 위한 서울특별시 노후준비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노후준비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안정적인 노후준비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시민의 노후준비 지원을 위하여 「노후준비 지원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후준비 지원을 위한 목표와 방향
2. 노후준비 지원 정책과제 발굴 및 추진계획
3. 노후준비 지원을 위한 노후준비지원센터 설치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4. 건강, 대인관계, 여가, 재무 등 영역별 노후준비 지원에 필요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노후준비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21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에 포함 할 수 있다.

제5조(서울특별시 노후준비지원센터)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서울특별시 노후준비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1. 지역 내 특화된 노후준비서비스 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기반조성
2. 시·군 노후준비지원센터에 대한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노후준비서비스 제공 및 연계
4. 노후준비서비스 홍보 및 노후준비 인식 제고
5. 그 밖에 시장이 노후준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서울특별시가 출연하거나 경비를 지원하는 법인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을 제1항 각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지원센터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9조의2 및 「노후준비 지원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조의2에 따른다.

제6조(사업비의 지원) 시장은 지원센터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보고·검사 등) ① 시장은 지원센터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출입 또는 서류검사를 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입 및 검사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8조(협의체 구성) 시장은 노후준비서비스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의 협력을 위하여 노후준비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제정이유

- 가.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했으며 서울시 역시 초고령사회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어, 이에 따라 모든 연령에서 노후 준비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음
- 나. 이에 상위법인 「노후준비 지원법」에 따른 시장의 책무 및 노후준비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
- 다. 또한, 노후준비서비스의 체계적인지원을 통해 노인 빈곤과 고립을 예방하고, 서울시민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지원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복지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제3조)
- 나. 노후준비지원의 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 규정(제4조)
- 다. 서울특별시 노후준비지원센터 지정 및 운영 등(제5조)
- 라. 노후준비협의체 구성 및 운영(제8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9623호**

서울특별시 건강가정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건강가정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5년 5월 19일

서울특별시 건강가정 지원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건강가정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하여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건강가정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강가정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마련함에 있어 가족구성원의 특성과 가정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4조(연도별 시행계획) ① 시장은 법 제15조에 따른 건강가정기본계획에 따라 건강가정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기관 또는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조(가족실태조사) ① 시장은 개인과 가족의 생활실태를 파악하고, 건강가정 구현 및 가정문제 예방 등을 위한 서비스의 욕구와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가족실태조사를 실시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가족실태조사를 가족에 관한 전문성 및 인력 등을 갖춘 연구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건강가정 지원) 시장은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다양한 가족형태를 포용하는 사회적 인식개선 및 교육
2. 가족유형별 맞춤형 지원

3. 가족 다양성에 대응하는 사회적 돌봄 지원 강화
4. 양성평등한 가족관계 형성을 위한 지원정책 확대

제7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법 제35조에 따라 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사회 맞춤형 건강가정사업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2. 건강가정 지원을 위한 연구
3. 자치구 및 관련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운영
4. 건강가정사업 홍보 및 정보 제공

③ 시장은 센터와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19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하여 가족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8조(센터의 조직) ① 센터에는 센터장과 건강가정사업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

② 센터에는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둔다.

③ 제2항에 따른 운영위원회 위원은 센터장, 관련 공무원, 건강가정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서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④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 사항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센터의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센터의 위탁운영)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 시행규칙 제6조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관기관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위탁·운영과 관련한 규정은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민간단체 등 지원) 시장은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3조(적용례) 제8조제3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가. 현행 조례는 상위법인 「건강가정기본법」에서 조례에 위임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만 담고 있어 조례의 명칭에 부합하는 건강가정 지원에 관한 포괄적인 규정을 담지 못하고 있음.
- 나. 본 개정안은 현행 조례를 전부개정하여 「건강가정기본법」에 명시된 시장의 책무를 구체화하고, 변화하는 가족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제3조)
- 나. 건강가정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4조)
- 다. 가족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5조)
- 라. 건강가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6조)
- 마.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등을 규정함(제7조부터 제10조까지)
- 바. 민간단체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1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9624호

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5년 5월 19일

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년”을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족돌봄청소년·청년”으로, “가족돌봄청년의”를 “가족돌봄청소년·청년의”로 한다.

제2조 중 ““가족돌봄청년”이란”을 ““가족돌봄청소년·청년”이란”으로, “34세”를 “39세”로 한다.

제3조제1항 및 제2항 중 “가족돌봄청년”을 각각 “가족돌봄청소년·청년”으로 한다.

제4조 중 “가족돌봄청년”을 “가족돌봄청소년·청년”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가족돌봄청년의”를 “가족돌봄청소년·청년의”로, “가족돌봄청년 지원”을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중 “가족돌봄청년”을 각각 “가족돌봄청소년·청년”으로 한다.

제6조 중 “가족돌봄청년”을 “가족돌봄청소년·청년”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 제9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가족돌봄청년”을 각각 “가족돌봄청소년·청년”으로 한다.

제8조 중 “가족돌봄청년”을 “가족돌봄청소년·청년”으로 한다.

제9조 중 “가족돌봄청년”을 “가족돌봄청소년·청년”으로 한다.

제11조 중 “가족돌봄청년”을 “가족돌봄청소년·청년”으로 한다.

제12조를 제13조로 하고,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비밀유지 의무) 가족돌봄청소년·청년지원 관련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가. 장애, 질병 등 문제를 가진 가족을 돌보고 있는 청소년 및 청년들이 돌봄에 따른 고충을 해결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 연령과 돌봄 가족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에 대한 지원 근거를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용어 가족돌봄청년을 가족돌봄청소년·청년으로 정비함(전체)
나. 지원대상을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족돌봄청소년·청년으로 규정함(제1조)
다. 관련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유지하도록 규정함(제11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9625호

서울특별시 청년 장애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청년 장애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5년 5월 19일

서울특별시 청년 장애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창업·일자리 정보 등”을 “창업·일자리 정보, 주거 지원 등”으로 한다.

제6조제2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사업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가. 청년 장해 제대군인은 군 복무 중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해 사회복귀과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들의 원활한 사회 정착을 위해 안정적인 주거 환경 확보가 중요함에 따라 청년 장해 제대군인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을 명문화하고, 주거 지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장의 책무에 주거 지원에 대한 내용을 명시함(제3조)

나. 상담센터의 업무에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사업을 포함하도록 함(제6조제2항)

◆ 서울특별시조례 제9626호

서울특별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5년 5월 19일

서울특별시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12호 및 제13호를 각각 제13호 및 제1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보육교직원에 대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 지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

1. 개정이유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은 여러 영유아와 밀접하게 접촉하여 감염병 전파 위험이 높으므로 보육교직원의 건강 보호 및 어린이집 내 감염 확산방지를 위해 보육교직원의 감염병 예방접종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필수예방접종 및 임시예방접종 관련 비용 지원에 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함(제22조제1항제12호)

◆ 서울특별시조례 제9627호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5년 5월 19일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8호 중 “발달장애인” 를 “법 제2조제2호라목에 따른” 으로 한다.

제1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시장은 평생교육센터 및 지원센터를 서울시가 정하는 기관을 통해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센터의 감독·지원 등에 반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가. 상위법에서 정한 발달장애인 보호자에 대한 감독 범위보다 조례에서 정한 감독 범위가 확대해석 될 여지가 있어 상위법령과 일치시켜 감독업무 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함.
- 나.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의 질적 성장을 위한 정기적인 평가를 실시하여 센터 서비스 질 제고, 시설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 예산 등의 개선을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2. 주요내용

- 가. 발달장애지원센터 업무의 “발달장애인 보호자에 대한 감독”의 문구를 “법 제2조제2호라목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감독”으로 개정하여 상위법령과 일치시키고, 발달장애지원센터 감독업무 대상을 명확하게 함.(제10조제3항제8호).
- 나.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및 지원센터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센터의 감독·지원 등에 반영함.(제12조제3항)

◆ 서울특별시조례 제9628호

서울특별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5년 5월 19일

서울특별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4호 중 “유족이” 를 “유족, 그리고 유족의 배우자가” 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가.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은 독립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수권자")과 그 배우자에게 지원하고 있으나, 수권자 사망 시 당해 연도 말 이후 배우자에 대한 의료지원 혜택이 중단되어 고령의 배우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음.
- 나. 독립유공자는 유공 인정시기가 1945년 8월 14일 이전으로 본인이 수권자인 경우가 극히 드물고, 현재 수권자 대부분이 자녀 및 손자녀 세대로 이미 고연령에 접어든 상황임.
- 다. 이에 수권자 사망 이후에도 그 세대를 같이하는 배우자에게 의료지원 혜택을 지속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한 독립유공자 유족의 실질적인 복지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현행 조례상의 표기 오류를 수정함(제2조)
- 나. 의료비 지원의 대상을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에서,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그리고 유족의 배우자’ 로 수정함(제3조제1항제4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9629호

서울특별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5년 5월 19일

서울특별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3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아동급식위원회를 둔다.

1.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
2. 자치구 아동급식 사무에 대한 지원 및 감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아동급식 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제3항에 따른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서울특별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제12조의3에 따른 서울특별시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와 서울특별시 아동급식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

—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

1. 개정이유

- 가. 「아동복지법」 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6항에 의거하여,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들에게 안전하고 균형 잡힌 식사제공을 위해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급식위원회를 신설하여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아동급식위원회 신설(제12조의3제3항)

◆ 서울특별시조례 제9630호

서울특별시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5년 5월 19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기본법」 제2조의2에 따라 화재, 재난·재해 등 위급한 상황에서 시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긴급차량의 신속한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긴급차량”이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중 소방차와 구급차를 말한다.
2. “소방차 진입불가지역”이란 폭 2m 이하 도로 또는 이동이 불가능한 장애물로 인하여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한 구간이 100m 이상인 지역을 말한다.
3. “소방차 진입곤란지역”이란 도로 폭 3m 이상의 도로 중 이동이 불가능한 장애물로 인하여 소방차 진입 곤란 구간이 100m 이상인 지역 및 그 밖의 상습주차 등의 이동이 가능한 장애물로 인하여 상시 소방차 진입 및 활동에 장애를 초래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방차 진입불가곤란지역의 긴급차량 신속 출동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의 수립·시행) 시장은 소방차 진입불가곤란지역에 대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소방차 진입불가곤란지역의 현황 및 실태조사
2. 소방차 진입불가곤란지역의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3. 소방차 진입불가곤란지역의 관리에 관한 사항
4. 훈련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소방차 진입불가곤란지역의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점검) 시장은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제4조에 따른 시행사항을 점검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긴급차량의 신속한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내 자치구 및 경찰청 등의 관계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효율적인 소방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를 위해 소방관서, 자치구, 경찰청 등으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제정이유

- 화재, 재난·재해 등 위급 상황에서 긴급차량이 신속히 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관리하고, 이를 위해 관계기관 및 자치구와의 실효성 있는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긴급차량”, “소방차 진입불가지역”, “소방차 진입곤란지역” 등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함(제2조)
- 나. 서울특별시장이 소방차 진입불가·곤란지역의 긴급차량 신속 출동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을 수립·추진하고, 이를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함(제3조)
- 다. 소방차 진입불가·곤란지역에 대한 현황 및 실태조사,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 훈련 및 홍보에 관한 사항 등의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함(제4조)
- 라.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 사항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시장이 점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5조)
- 마. 긴급차량의 신속한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내 자치구 및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의 구축과 실무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6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9631호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5년 5월 19일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7. “3종시설물”이란 특별법 제7조제3호의 시설물을 말한다.

제6조제1항 중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을 “1종·2종·3종시설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1종·2종이외시설물”을 “1종·2종·3종이외시설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2017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특정관리대상시설’이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3종시설물’로 편입되었고,
- 2024년 12월 정밀안전진단의 대상이 기존의 ‘1종시설물’뿐만 아니라 준공 후 30년이 경과되고 안전등급이 일정 등급 이하인 ‘2·3종시설물’까지 확대하도록 법령이 개정됨.
- ‘3종시설물’과 ‘법정외 시설물’을 ‘1종·2종이외시설물’로 묶은 부분에서 ‘3종시설물’을 분리하여 관리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 가. 건설공사를 통하여 만들어진 3종시설물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정의함(제3조제17호)

◆ 서울특별시조례 제9632호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5년 5월 19일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품질검사를”을 “품질검사 대행을”로, “별지 제1호서식의 품질검사 의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품질검사 의뢰서를 제출받은 시험소장은 시험완료 예정일이 명시된 접수증을 발급”을 “법 제62조제15항에 따른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이하 “정보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품질검사를 의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험소장은 제3항에 따라 대행을 의뢰받은 품질검사를 완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품질검사 성적서 및 품질검사 내용을 열람이 가능하도록 정보망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자 등이 건설공사의 품질검사 대행을 의뢰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의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이하 “정보망”)’ 을 활용하도록 「건설기술 진흥법」 이 개정(시행 2024.7.10.)됨에 따라 서울특별시품질시험소에 건설공사 품질시험 대행 의뢰 시 정보망을 통해 의뢰하도록 하고,
- 품질검사가 완료되면 7일 이내 정보망에 등록하도록 하여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대한 효율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자 등이 품질시험소에 건설공사의 품질검사 대행을 의뢰하는 경우 정보망을 통하여 의뢰하도록 함(제3조제3항).
- 나. 품질시험소장으로 하여금 의뢰받은 품질검사의 성적서 및 내용을 완료한 날부터 7일 이내 정보망에 입력하도록 함(제3조제4항).

◆ 서울특별시조례 제9633호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5년 5월 19일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호제1항 전단 중 “별지 제6호 및 제7호”를 “별지 제6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내부와 외부의 지정된 장소에 각각 게시하여 누구나 이를 확인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를 “내부에 게시하여야 하고, 시장이나 관리자의 요구가 있을 때는 운영자증명서와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8조제2항제2호의 각 목 중 “바. 그 밖에 시민불편을 야기하여 이전이 필요한 시설물”을 “사. 그 밖에 시민불편을 야기하여 이전이 필요한 시설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호서식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6호서식] 운영자 증명서

(별지 제6호서식)

() 운영자 증명서

- 관리번호
- 운영기간 . . . ~ . . .
- 장 소 구 (도로명) (건물번호) 앞 (주요건물 기재)
- 취급품목
- 운 영 자

천 연 색 사 진 (가로5cm×세로7cm)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
< 성 명 >
<운영자 본인>

천 연 색 사 진 (가로5cm×세로7cm)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
< 성 명 >
<대리운영자(운영자와의 관계)>

위 사람은 () 운영자임을 확인함.
 년 월 일

서울특별시 ○○구청장 [직인]

※ 이 시설물은 조례 제5922호에 따라 위와 다른 사람이 운영할 수 없습니다.
(신고처 : ○○구청 ○○과 ☎ 02-0000-0000)

※규격 : 17cm × 20cm

(뒷 면)

유 의 사 항

1. 운영할 때는 반드시 이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하며, 증명서에 등재되어 있지 않는 자는 시설물을 운영할 수 없습니다.
2. 도로점용 허가 및 시설물의 사용 권리·의무를 다른 사람에게 전매·전대·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임의로 장소를 이전해서도 아니 됩니다.
3. 운영자는 도로점용허가 및 시설물 대부계약의 내용 및 조건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현행 조례는 보도상영업시설물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운영자증명서를 시설물 내부 및 외부의 지정된 장소에 각각 게시토록 하고 있으나, 운영자를 보도상영업시설물 이용자가 아닌 불특정 다수로부터의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 내부에만 게시토록 하고 ‘외부게시’ 조항을 삭제코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보도상영업시설물 운영자증명서 외부게시 조항 삭제(제7조제2항)
- 나. 운영자 증명서의 시설물 외부게시 의무 조항 삭제에 따른 관련 별지 서식 삭제(별지 제 7호서식)

◆ 서울특별시조례 제9634호

서울특별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5년 5월 19일

서울특별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제15조제4항 중 “재난안전실장”을 “건설기술정책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교통실장”을 “재난안전실장, 교통실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재난안전실 담당과장”을 “기술심사담당관”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

1. 개정이유

- ' 25.1.1일자로 서울시 기반시설 총괄관리 업무가 기존 재난안전실 재난안전정책과에서 건설기술정책관 기술심사담당관으로 이관됨에 따라, 본 조례의 기반시설관리위원회의 소관부서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기반시설관리위원회의 부위원장을 건설기술정책관으로 변경하고 당연직 위원에 재난안전실장을 추가하며, 위원회 간사를 기술심사담당관으로 변경함(제15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9635호

서울특별시 서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서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5년 5월 19일

서울특별시 서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이사장은 체육시설 등을 포함하는 대행사업 관리·운영에 있어 안전한 환경과 질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

1. 개정이유

- 서울시설공단이 운영하는 서울월드컵경기장 등 체육시설을 포함한 대행사업 시설물들에 대해 안전한 환경과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이사장이 체육시설 등을 포함하는 대행사업 관리·운영에 있어 안전한 환경과 질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도록 조항 신설(제8조제3항)

◆ 서울특별시조례 제9636호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5년 5월 19일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택지”를 “도시의 개발·정비, 토지”로, “시민의 주거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을 “시민복지 증진과 주거생활안정에 이바지하고 지역경제 발전 및 지역개발 활성화를”로, “서울주택도시공사”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로 한다.

제2조 중 “서울주택도시공사”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당시 등기부 기타 공부상의 서울주택도시 공사의 명의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의 명의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당시 서울주택도시공사가 행한 행위 기타 법률관계에 있어서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로 본다.

③ 이 조례 시행당시 다른 조례나 규칙 등에서 서울주택도시공사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또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서울주택도시공사”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로 한다.

제8조제1항, 제8조제2항제1호, 제8조제2항제2호 및 제8조제2항제3호 중 “서울주택도시공사”를 각각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로 한다.

제8조의3 제목 외의 부분 중 “서울주택도시공사”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로 한다.

제8조의4제1항제5호 중 “서울주택도시공사”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로 한다.

제13조제1항 및 제13조제2항 중 “서울주택도시공사”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로 한다.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서울주택도시공사”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로 한다.

- ② 서울특별시 공동체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가목 중 “서울주택도시공사”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로 한다.
- 제9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서울주택도시공사”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로 한다.
- ③ 서울특별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서울주택도시공사”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로 한다.
- ④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2항제2호 중 “서울주택도시공사”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로 한다.
- ⑤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 중 “서울주택도시공사”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로 한다.
- ⑥ 서울특별시 디지털미디어시티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서울주택도시공사”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로 한다.
- ⑦ 서울특별시 마곡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3호 중 “서울주택도시공사”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로 한다.
제13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서울주택도시공사”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로 한다.
- ⑧ 서울특별시 민간토지 활용 공공주택 건립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6조제2항 중 “서울주택도시공사”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로 한다.
- ⑨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6호다목 중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서울주택도시공사”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로 한다.
제39조 중 “서울주택도시공사”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로 한다.
제51조 중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서울주택도시공사를”을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를”로 한다.
- ⑩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3호 중 “서울주택도시공사”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로 한다.
제2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서울주택도시공사”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로 한다.
- ⑪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다목 중 “서울주택도시공사”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서울주택도시공사”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로 한다.
제9조제4항 전단 중 “서울주택도시공사”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서울주택도시공사”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로 한다.
- ⑫ 서울특별시 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서울주택도시공사”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로 한다.
- ⑬ 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3조제2항 중 “서울주택도시공사”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로 한다.

⑭ 서울특별시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서울주택도시공사”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로 한다.

제9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⑮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8호라목 중 “서울주택도시공사”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로 한다.

⑯ 서울특별시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2호 중 “서울주택도시공사”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로 한다.

⑰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중 “서울주택도시공사”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로 한다.

⑱ 서울특별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5호 중 “서울주택도시공사”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로 한다.

제5조제2항제9호 중 “서울주택도시공사”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로 한다.

⑲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3항 중 “서울주택도시공사”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로 한다.

제34조제2항 중 “서울주택도시공사”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로 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현재 서울주택도시공사는 토지의 취득과 주택의 건설·공급, 주거복지 사업 외 정비사업과 도시개발사업, 도시기반시설 등 도시계획사업, 관광지 개발, 한강 수상 및 수변 개발사업, 산업거점개발사업 등 도시개발의 필요성에 따라 다양한 개발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이에 맞춰 개발업무를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사명에 명시하여 기관 명칭을 변경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과 주거생활안정 및 지역경제 발전, 지역개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전문 공공기관의 역할과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기관 명칭을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로 변경함(제명, 제1조, 제2조)
- 나. 조례의 목적에 ‘도시의 개발·정비, 토지’를, ‘시민복리 증진과 주거생활안정에 이바지하고 지역경제 발전 및 지역개발 활성화’를 명시함(제1조)
- 다. 부칙 -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및 다른 조례의 개정 등

◆ 서울특별시조례 제9637호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5년 5월 19일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1항 본문의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건축비는 「주택법」 제57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본형건축비 (영 제67조에 따른 일반분양 공고일 직전에 고시된 건축비로 한다)의 8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에 따른다.

제41조제1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영 제68조제2항제3호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항 및 별표 1의3 에 따라 가산되는 항목은 다음 각 호로 하며, 구체적인 가격 산정방식은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 기본형 건축비에 가산되는 금액은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철근콘크리트 라멘구조,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또는 철골구조의 구조형식의 가산비용
나. 주택시공 및 분양 보증수수료

다. 공동주택성능 등급 및 소비자만족도 우수업체로 선정된 경우 추가로 인정되는 비용

라.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1의 3의 항목 중 위 각 목을 제외한 나머지 가산하는 비용. 단 위 각 목의 합계 비용의 1퍼센트 이내로 인정한다.

2. 부속토지에 가산되는 금액은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말뚝박기 공사비·암석지반 공사비·흙막이 및 차수벽 공사비·지하공사에서 특수공법 사용에 따른 공사비·방음시설 설치비

나. 간선시설(도로) 및 도시공원의 설치비용. 단, 무상양도 국공유지 토지비용은 제외하여 산정하고, 그 나머지 비용에 대한 인정범위는 40퍼센트 이상의 수준으로 시장이 정할 수 있다.

다. 지장물 철거비용

라. 진입도로의 개설로 편입되는 사유지의 가액

마. 감정평가수수료, 검토수수료

바.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항의 항목 중 위 각 목을 제외한 나머지 가산하는 비용. 단 위 각 목의 합계 비용의 1퍼센트 이내로 인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41조의 개정 규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68조의 시행일 (2025.3.18.)부터 최초 일반분양입주자 모집 공고한 정비구역부터 적용받는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주택재개발사업 사업 시행 시 시장이 인수하는 임대주택의 인수가격은 그간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하고 있었으나, 최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 개정되며 기본형 건축비를 적용하도록 변경되었고, 이때 가산비는 조례로 별도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시행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재개발임대주택의 인수가격 기준을 조례에 명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재개발임대주택 인수가격 산정 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본형건축비를 적용함 (제41조제1항)
- 나. 조례로 별도로 정하도록 한 가산비 항목을 신설함(제41조제2항)

◆ 서울특별시조례 제9638호

서울특별시 집합건물 건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집합건물 건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5년 5월 19일

서울특별시 집합건물 건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조정 비용) 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5항에 따라, 법 제52조의10에 따른 비용을 제외한 조정 비용이 당사자의 신청 또는 당사자와의 협의로 발생한 경우 당사자 간 합의된 비율대로 당사자가 부담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당사자 간에 비용 부담에 대하여 합의가 되지 아니하면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에서 부담 비율을 권고할 수 있다.

③ 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당사자등이 비용을 부담한 경우에는 해당 분쟁에 관한 조정안에 비용을 부담한 주체와 금액 또는 당사자간의 비용부담 비율을 기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에서 이미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대상 분쟁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문 형식에 맞지 않게 구성된 제8조(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대상)를 삭제함
- 집합건물에서 발생하는 분쟁이 다양해지는 가운데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비용 부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조정 비용 부담 기준을 신설하여, 당사자 간의 원활한 조정 절차를 지원하고 공정한 비용 부담 원칙을 수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대상 삭제(제8조)
- 나.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비용 규정 신설(제14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9639호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5년 5월 19일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 제목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기간)” 을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기간 등)” 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 또는 구청장이 법 제27조제5항에 갈음하여 사업시행인가일 또는 실시계획인가일 이후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부담시키려는 경우 시장 또는 구청장은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해당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시금고 또는 해당 자치구의 구금고에 예치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예치한 현금은 해당 기반시설의 설치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20조제1항 중 “50퍼센트 이상을” 을 “50퍼센트를” 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영 제34조 제1항제1호 및 같은조같은항제3호에서 정하는 비율 범위 내에서 완화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재정비촉진지구 내에서 개별 사업구역의 시행 속도가 다르게 나타날 경우 기반시설의 계획적인 설치가 어려운 상황임에 따라, 사업구역별 시행단계에 맞춰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사전에 시금고 또는 구금고에 예치할 수 있게 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지원하고자 함.
- 재정비촉진지구 내에서 재개발·재건축사업 추진 시 임대주택 건설비율 및 완화규정을 신설함.

2. 주요내용

- 가. 시장 또는 구청장이 사업시행자에게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미리 부담시키려는 경우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해당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시금고 또는 구금고에 예치하게 함(제19조제3항)
- 나. 시금고 또는 구금고에 예치한 현금은 해당 기반시설의 설치에만 사용토록 함(제19조제4항)
- 다. 재정비촉진사업 중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등의 의무건설 비율을 50퍼센트로 함(제20조제1항)
- 라. 재정비촉진사업 중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의 임대주택등의 건설비율은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행령에서 정하는 비율의 범위 내에서 완화할 수 있도록 함(제20조제8항)

◆ 서울특별시조례 제9640호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5년 5월 19일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6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0조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역의 각 승강장 경계 및 출입구로부터 350미터 이내의 토지를 사업대상지로 지정할 수 있다.

제5조제4항 중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시장”으로 한다.

제37조의 제목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분양대상)”을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개발사업의 분양대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가로주택정비사업”을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개발사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도시정비법」 제2조제11호”를 “도시정비법 제2조제11호”로 한다.

제45조제1항에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도시정비법 제36조에 따른 전자서명동의서 제출 비용
5. 도시정비법 제44조의2에 따른 온라인총회 개최 비용
6. 도시정비법 제45조에 따른 전자적 방법을 통한 의결권 행사 비용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5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2025년 6월 14일부터 시행하고,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2025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첫째, 역세권, 준공업지역에서 5천제곱미터 미만인 소규모 지역의 도시·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소규모재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역세권 범위를 위원회를 거쳐 완화할 수 있도록 함.
- 둘째, 소규모재개발사업으로 공급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를 명확히 함으로써, 향후 사업 추진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
- 셋째, 소규모정비사업 총회의 전자적 의결 등에 소요되는 비용 50%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조합 총회 개최의 편의성 제고 및 신속하고 투명한 의사결정 등으로 사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역세권 범위를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50미터 이내로 완화할 수 있도록 함(제3조제6항).
- 나. 소규모재개발사업으로 분양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를 명시함(제37조제1항).
- 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 총회의 전자적 의결 등에 소요되는 비용 50%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제45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

◆ 서울특별시조례 제9641호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5년 5월 19일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 중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8조의2제1호”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9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7조제1항제1호다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중 “영 제5조의5제1항제8호에 따른 심의대상건축물은 다중이용건축물”을 “영 제5조의5제1항제4호 또는 같은 항 제8호에 따른 심의대상건축물(다중이용건축물”로, “건축물로”를 “건축물을 말한다)로 심의사항은”으로 하고, 같은 목 3)을 삭제하며, 같은 항 제2호다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영 제5조의5제1항제4호 또는 같은 항 제8호에 따른 심의대상건축물(다중이용건축물, 시가지·특화경관지구 내의 건축물,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을 말한다)로서 제1호다목 및 라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심의사항.

제7조제1항제2호다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단서 중 “분양대상건축물”을 “시가지·특화경관지구 내의 건축물의 경우 시가지·특화경관지구 내의 이면도로에 접하는 건축물로서 허가권자가 미관에 영향이 없다고 판단되는 건축물은 제외하며,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 한다.

제24조제1항제5호 중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54조제3항”을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45조제2항”으로 한다.

제26조제3항제1호의 계산식 중 “면적/대지면적)]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55조”를 “면적/대지면적)]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48조”로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별표 4] <개정 2025.00.00.>

대지안의 공지기준 (제30조관련)

1.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대상 건축물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할 거리
용 도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	
가. 공장, 창고 다만, 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경우 제외	• 500제곱미터 이상	• 준공업지역 : 1.5미터 이상 •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 3미터 이상
나. 판매시설, 숙박시설(일반숙박시설 제외), 의료시설, 운동시설 및 관광휴게시설	• 1,000제곱미터 이상 ※ 2007년 5월 29일 이후 건축된 건축물의 의료시설로의 용도변경은 지방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 3미터 이상
다. 문화 및 집회시설 (전시장 및 동식물원 제외), 종교시설, 장례식장	• 1,000제곱미터 이상	• 3미터 이상
	• 1,000제곱미터 미만	• 1미터 이상
라. 운수시설,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운전학원 및 정비학원 제외),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다만, 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경우 제외	• 500제곱미터 이상	• 준공업지역 : 1미터 이상 •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 1.5미터 이상
마. 공동주택		• 아파트 : 3미터 이상 단, 도시형생활주택(아파트형)은 2미터 이상 • 연립주택 : 2미터 이상 • 다세대주택 : 1미터 이상

2.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대상 건축물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할 거리
용 도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	
가. 전용주거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 (공동주택 제외)		• 1미터 이상
나. 공장, 자동차관련시설(운전학원 및 정비학원 제외),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다만, 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경우 제외	• 500제곱미터 이상	• 준공업지역 : 1미터 이상 •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 1.5미터 이상
다. 판매시설, 숙박시설(일반숙박시설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 제외) 및 종교시설, 장례식장 다만, 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경우 제외	• 1,000제곱미터 이상	• 1.5미터 이상
	• 1,000제곱미터 미만	• 1미터 이상
라. 공동주택 다만,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공동주택으로서 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 아파트 : 3미터 이상 단, 도시형생활주택(아파트형)은 2미터 이상 • 연립주택 : 1.5미터 이상 • 다세대주택 : 1미터 이상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첫째, 3~4인 가구를 위한 중소형 평형의 주택 공급 활성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도시형생활주택의 유형 명칭 변경 및 규제 완화 등 관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과의 정합성을 맞춰 별표를 정비하려는 것임.
- 둘째, 「건축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해 시 건축위원회 심의사항과 구 건축위원회 심의사항의 정합성을 맞추고, 본 조례에서 인용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가 전면 개정됨에 따라 인용 조문들을 현행 조례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 관련 인용 조항을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8조의2제1호에서 제9조제1항제1호로 변경함(제3조제1항).
- 나. 건축위원회 심의사항 관련 조항을 정비함(제7조제1항제1호 다목 및 같은항제2호 다목).
- 다. 학교이적지 관련 인용 조항을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54조제3항에서 제45조제2항으로 변경함(제24조제1항).
- 라.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관련 인용 조항을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에서 제48조로 변경함(제26조제3항).
- 마.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을 도시형생활주택(아파트형)으로 변경하고,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 이격거리 완화대상이 되는 30세대 미만 도시형생활주택의 세대수 제한규정을 삭제함(별표 4)

◆ 서울특별시조례 제9642호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5년 5월 19일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55조에 따라 설치된 시도시기획위원회에서 도시재생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2030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으로 도시재생의 패러다임이 ‘개발’ 과 ‘보존’ 의 균형으로 전환되었으며, 이에 따라 재생지역 내 정비사업 추진 및 거점시설 생활SOC 확충으로 사업 방향이 개편됨
- 그러나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정비사업 추진 시, 정비계획과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결정을 위해 도시계획위원회와 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를 각각 거쳐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 도시재생위원회 기능을 도시계획위원회로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신속하고 효율적인 심의절차를 제공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내 용도지역·지구·구역 지정 및 변경 시에 효율적이고 일원화된 심의 절차를 제공하고자 함(제6조제4항).

◆ 서울특별시조례 제9643호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5년 5월 19일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12조제8항”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제4호 중 “제6조”를 “제7조”로 한다.

제2조제3항제1호나목 중 “제17조제2항제2호”를 “제17조”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종료시에”를 “종료 시에”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제4호로 한다.

제4조제1항제7호 단서 중 “디지털 광고물”을 “디지털광고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연립형 간판”을 “연립형간판”으로 한다.

제9조의2제1항제6호 중 “비철(非鐵)금속”을 “금속 등”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2호 중 “디자인서울거리 조성사업에 따라 설치된 시설”을 “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것”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제7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별표 1의 공원이용시설 중 제1호가목 내 선착장(「서울특별시 리버버스 운영과 환경친화적 선박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의 리버버스를 위한 선착장에 한정한다)

제11조제1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소재는 생분해, 산화생분해, 바이오기술 및 탄소 저감형 기술 등을 적용하거나, 에너지·자원의 투입과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자연 친화적 소재(이하 “친환경 소재”라 한다)를 사

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의2를 삭제한다.

제11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8호 제4호”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4호”로 한다.

제12조제2항제3호 단서 중 “다른 현수막의 게시신청이 없거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호에 가목부터 다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제11조제1항제3호”를 “제11조제1항제4호”로 한다.

- 가. 다른 현수막의 게시신청이 없는 경우
- 나. 친환경 소재를 사용한 현수막을 게시하는 경우
- 다.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7조제2항제1호 중 “. 건물”을 “건물”로, “해당 유리벽·창문·출입문 등”을 “해당 업소 등의 유리벽·창문·출입문 등 각각의”로, “이내로서”를 “이내로 하고”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장은 옥외광고사업자 단체 또는 자치구 등으로부터 창문 이용 광고물 개선 시범사업 신청이 있을 경우, 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업소 등의 유리벽 안쪽, 창문 또는 출입문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광고물을 표시하도록 할 수 있다.

1. 천·종이·비닐 등 유연성 원단을 이용하는 경우 전체 면적의 최대 4분의 1 이내로 한다.
2. 목재·아크릴·금속재 등을 이용하여 판이나 입체형으로 설치하는 경우 전체 면적의 4분의 1 이내로 하고 최대 1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3. 건물의 벽면에 광고물 등의 표시가 적합하지 않거나 벽면 이용 간판이 없는 경우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가. 문자·도형 등을 목재·아크릴·금속재 등을 이용하여 판이나 입체형으로 제작하여 해당 업소 등의 천장에 매달거나 지주에 표시하되, 창문으로부터 안쪽으로 2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나. 규격은 세로는 45센티미터 이내로 하고, 가로는 해당 업소 가로 폭의 80퍼센트 이내로 하고 최대 폭은 10미터 이내여야 한다.

제30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광고물등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과 재활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3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2(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① 시장 및 구청장은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을 촉진하고,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제작 및 사용
 2.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을 위한 사업
 3. 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 사업
 4.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에 관련한 교육·홍보 사업
 5. 그 밖에 시장 및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시장 및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③ 시장은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여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옥외광고산업 진흥을 도모하고자 함
- 옥외광고물 중 하나인 현수막과 관련하여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을 촉진하고, 폐현수막 재활용을 활성화하여 환경오염을 줄이고 자원 낭비를 방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간판에 사용되는 색채로 적색류와 흑색류의 사용을 2분의 1 (50%) 이내로 제한하는 규정 삭제(제2조제3항4호)
- 입간판 재료를 '비철(非鐵) 금속'에서 '금속 등'으로 변경(제9조의2제1항제6호)
- 공공시설물 광고물 중 가로영상문화시설 단서 조항 '디자인 서울거리 조성사업에 따라 설치된 시설에 한정한다' 개정(제10조제1항제2호)
- 상업광고를 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의 종류에 '선착장' 추가(제10조제1항제6호)
-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을 위하여 일반적인 표시방법으로 소재에 관한 사항을 추가(제11조제1항제8호)
- 조례 위임 사항이 아닌 '정당현수막의 표시방법' 조항 삭제(제11조의2)
-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기준에 친환경 소재 사용 현수막에 인센티브 제공 근거를 마련(제12조제2항제3호)
- 창문을 이용한 전광류(동영상 변화가 없는) 사용 광고물을 '상업지역 건물 1층'으로 제한한 규정 삭제(제17조제2항2호)
- 창문 이용 광고물 표시방법 기준 완화를 위한 '시범사업' 조항 추가(제17조제4항)
- 시장이 수립하는 지원계획의 내용으로 광고물등의 친환경 소재 사용촉진과 재활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추가(제30조제1항제3호)
- 시장 및 구청장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시책과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제30조제1항 신설)
-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과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제30조제2항)
-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과 재활용 활성화의 공로에 대한 표창에 관한 사항(제30조제3항)

◆ 서울특별시조례 제9644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5년 5월 19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6. 저출산·고령화대책 지원시설(「서울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4조부터 제4조의8까지에 따라 설치되는 시설,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제14조에 따라 설치되는 시설로 시장 또는 구청장이 직접 운영하거나 또는 위탁 운영하는 시설물 및 이를 위한 부지를 말한다.)
7. 공공지원시설(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개별 조례에 따라 시장이 별도로 정하여 설치되는 시설로 시장 또는 구청장이 직접 운영하거나 또는 위탁 운영하는 시설물 및 이를 위한 부지를 말한다.)

제51조제2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제48조제4호 및 제5호의 지역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영 제85조제1항의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의 범위까지 완화할 수 있으며, 세부 운영기준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 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및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 나. 소규모 주택정비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율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및 소규모재개발사업

별표 1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2종일반주거지역 및 제3종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 완화에 관한 규정의 유효기간) 제51조제2항제9호 규정은 2028년 5월 18일까지 건축허가(건축신고 포함)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는 경우까지 적용한다.

[별표 16]

상업지역 안에서 주거복합건물의 용도 비율 및 용적률

(별표 8 제1호가목, 별표 9 제1호나목, 별표 10 제1호가목, 제50조제1호 관련)

1. 상업지역 안에서 주거복합건물 건축 시 주거용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면적(부대시설의 면적을 포함한다)은 전체 연면적의 10퍼센트(의무 비율)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주거용 외의 용도 비율(의무 비율)에서 「주택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준주택은 제외한다.
2. 상업지역 안에서 주거복합건물의 용적률

상업지역 안에서 주거복합건물의 용적률은 제48조제7호부터 제9호까지 정한 용적률 이하로 하되 주거용 용적률은 다음과 같이 한다.

 - 가.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용적률(주거용 부대시설의 용적률을 포함한다)은 400퍼센트 이하로 한다.
 -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임대주택 추가 확보 시(증가하는 용적률의 2분의1에 해당하는 용적률)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용적률은 중심상업지역 및 서울도심을 제외한 일반 상업지역은 600퍼센트 이하, 서울도심 내의 일반상업지역과 근린상업지역은 500퍼센트 이하로 한다.
 - 다.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도입하는 경우, 해당 용적률과 같은 비율의 주거용 용적률을 추가로 허용할 수 있다.
 - 1)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생활권계획을 포함한다)상의 중심지 육성방향에 부합하는 용도로 시도시계획위원회, 시공동위원회 등 도시계획 심의를 위한 해당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용도
 - 2) 그 밖에 지역의 전략적 육성, 시 정책목적 달성 등을 위해 시도시계획위원회, 시공동위원회 등 도시계획 심의를 위한 해당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용도
 - 라.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다음 요건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도시계획위원회·시도시재정비위원회 또는 시시장정비사업심의위원회 등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용적률(주거용 부대시설의 용적률을 포함한다)을 가목과 나목에서 정한 주거용 용적률 이상으로 할 수 있다.
 - 1)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시장이 주거기능의 입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선정한 지역
 - 2) 「도시재정비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
 - 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승인대상 전통시장
 - 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 5) 시장이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선정한 지역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저출생 극복과 고령화 대책 마련을 위해 공공기여 시설에 서울형 키즈카페, 공공산후조리원, 노인복지시설 등과 같은 저출산·고령화 대책 지원시설 등이 포함되도록 하고자 함
- 기존의 공공청사,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는 공익적 목적을 가지는 공공지원시설을 공공기여 시설에 포함하여 다양한 공공서비스 수요에 대응하는 시설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제2종 및 제3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조례로 정하는 소규모건축물 건축 시 용적률을 법적상한용적률까지 완화하여 한시적으로 사업성을 개선하고 일시적인 소규모건축물 공급 부족 현상에 대응하고자 함
- 온라인 기반 소비증가 등 상업공간 수요 감소예측 결과에 대응하여 도심공동화 현상을 방지하고 상주인구 증가 등을 유도하기 위해 상업지역 안에서의 주거복합건물 비주거비율을 완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저출생 극복과 출산장려, 효율적 노인복지정책 등 추진을 위해 조례로 정하는 공공기여 시설 중 ‘저출산·고령화 대책 지원시설’을 추가 신설함 (제20조제2항제6호)
- 나. 주민의 복리 증진 등 다양한 공공서비스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조례로 정하는 공공기여 시설 중 ‘공공지원시설’을 추가 신설함 (제20조제2항제7호)
- 다. 제2종 및 제3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조례로 정하는 소규모건축물 건축 시 법적상한용적률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함 (제51조제2항제9호 및 부칙 제2조)
- 라. 상업지역 안에서 주거복합건물의 비주거비율을 20퍼센트 이상에서 10퍼센트 이상으로 완화함 (별표 16)

◆ 서울특별시조례 제9645호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5년 5월 19일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라목을 마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선사업에 사용되는 도선
제2조제3호마목을 바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선장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가. 서울특별시에서 출퇴근 시간대에 심각한 육상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대안으로 한강 수상 교통수단인 한강버스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나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에서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명확한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 나. 이에 대중교통으로서 한강버스 운영의 안정적인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시민들의 다양한 대중 교통수단 선택권을 보장하며, 수상교통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한강버스 및 선착장 시설과 관련한 근거조항을 마련하고자함.

2. 주요내용

- 가. '대중교통수단'에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선을 명시함.(제2조제2호라목 신설)
- 나. '대중교통시설'에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선장을 명시함.(제2조제3호마목 신설)

◆ 서울특별시조례 제9646호

**서울특별시 개인택시 및 개별·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개인택시 및 개별·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5년 5월 19일

서울특별시 개인택시 및 개별·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개인택시 및 개별·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개인택시 및 개인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호를 제3호로 한다.

2. 개인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운송사업자”로 한다.

제3조 중 “개별·용달화물자동차”를 “개인화물자동차”로 한다.

제4조 중 “개별·용달화물자동차”를 “개인화물자동차”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2019.7.1.시행)으로 화물운송사업이 기존 용달/개별/일반 업종에서 개인/일반 업종으로 개편됨에 따라 개편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 나. 제명의 “개별·용달화물자동차”를 “개인화물자동차”로 변경하고, 정의하고 있는 용어를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여 시민 혼선을 예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및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용어의 정의를 삭제하고 “개인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용어의 정의를 추가함(제2조)
- 나. “개별·용달화물자동차”를 “개인화물자동차”로 변경함(제3조 및 제4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9647호

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5년 5월 19일

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를 활용하여 유상운송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자 또는 「자동차관리법」 제27조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를 받고 여객이 탑승하는 기술실증을 시행하는 사업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가. 자율주행자동차 기술을 활용한 대중교통 운행 확대에 따라 차고지 확보가 필요한 만큼
공영차고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 대상에 자율주행자동차를 활용하여 유상운송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자와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를 받고 여객이 탑승하는 기술실증을 시행하는
사업자 추가(제4조제1항제10호)

◆ 서울특별시조례 제9648호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투자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투자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5년 5월 19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되는 재단법인 서울투자진흥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세계 투자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외국인투자 유치를 통한 서울특별시의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투자”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가 관할하는 지역 내에서 「외국인투자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2. “외국인투자기업”이란 법 제2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외국투자자가 출자한 기업으로서 시가 관할하는 지역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투자진흥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운영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민법」 등 재단법인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설립) 재단은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제5조(재단의 사업) 재단은 세계 투자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외국인투자 유치를 통한 시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실태조사 및 전략 수립
2. 외국인투자·정주 환경 등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
3.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국내외 교류 지원
4. 공간, 자금, 투자, 인재 등 외국인투자 유치 활성화에 필요한 지원
5. 제1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외국인투자 유치 지원 사업
6. 그 밖에 정부, 시 자치구 또는 관련 기관·협회 등에서 위탁하는 외국인투자 유치 사업

제6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규정
5.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감사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 기금에 관한 사항
9. 공고에 관한 사항
10. 사업에 관한 사항
1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사전에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임원) ① 재단에는 이사장을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이사와 2명 이내의 감사를 둔다. 다만 이사회의 구성 중 어느 한쪽의 성별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을 포함한 선임직 이사 및 감사는 시장이 임명한다.

③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2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으며, 그 밖에 이사장·이사 및 감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이사장을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제8조(이사회) ① 재단의 사업수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정관에서 정한 당연직 이사 기재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이사장과 감사)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며, 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감사는 재단의 회계 및 사무를 감사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0조(직원)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장이 임명한다.

제11조(기본재산의 조성) 재단의 기본재산은 시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제12조(출연금 및 기금) ① 시는 재단의 설립·시설·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금을 교부하거나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

② 재단의 설립·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재단에 기금을 둘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교부는 연도별 사업계획서에 대한 시장 승인 후 재단에 교부하는 것

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신속한 출연금 교부가 필요하거나, 시의 정책 변경으로 교부 시기가 달라지는 경우 시와 재단이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재원 등) 재단의 시설·운영·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시의 출연금, 기금운용과 관련한 이자수익금, 수탁사업수입금, 재단사업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14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시의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5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 연도 개시 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사업계획서에는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계획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성과관리 계획에는 성과목표 측정을 위한 성과지표 및 검증방법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사업계획서 승인 시, 중장기적 관점에서 시 재정에 미치는 영향, 재단의 자체적인 재원확보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필요시 재단에 사업계획 등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결산서 등의 제출) ①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결산서류를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세입·세출에 관한 예산·결산보고서 및 발생주의·복식부기에 따른 재무회계 결산서
 2.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제1호의 예산·결산보고에 대한 검토의견 및 재무회계 결산에 대한 감사보고서
- ② 재단은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의2에 따라 예산서 및 결산서를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외국인투자 유치에 대한 지원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재단에 해외 투자유치 지원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업무 위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 협약에 따른다.

제18조(보고 및 검사)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재단의 경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경영평가)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단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경영평가결과에 따라 재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경영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관련기관·단체 또는 관계전문가에게 그 평가를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20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 4에 따라 재단에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제정이유

- 서울시의 해외 기업·자본유치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투자진흥재단의 설립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재단의 사업, 정관 기재사항, 임원 및 이사회, 직원 임명 등에 관한 사항 명시(제4조부터 제10조)
- 나. 기본재산의 조성, 출연금 및 기금, 운영재원, 수익사업, 사업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결산서 등에 관한 사항 명시(제11조부터 제16조)
- 다. 업무의 위탁 및 자료제공, 지도·감독 및 공무원 파견 등에 관한 사항 명시(제17조부터 제20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9649호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5년 5월 19일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제목 “(설치)” 를 “(기금의 설치)” 로 한다.

제6조제3호 중 “운용·관리” 를 “관리·운용” 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2호 중 “도시계획과장” 을 “도시공간전략과장” 으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운용·관리” 를 “관리·운용” 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를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로 한다.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계획과장” 을 “도시공간전략과장” 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운영에 관한 적용례) 2024년 11월 13일 시행된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제7조제1항과 제9조제2항의 개정 규정은 2024년 11월 13일 이후 운영되는 위원회부터 적용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공공시설등 설치기금의 관리 운용 부서 정비를 위해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기금의 관리·운용의 기금관리공무원 중 분임기금운용관을 ‘도시계획과장’ 에서 ‘도시공간전략과장’ 으로 변경함(제7조)
- 나.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부위원장을 ‘도시계획과장’ 에서 ‘도시공간전략과장’ 으로 변경함(제9조)
- 다. 그 밖의 제목 및 문구 정비

◆ 서울특별시조례 제9650호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5년 5월 19일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경제실”을 “기획조정실 밑에 규제혁신기획관을, 경제실”로 한다.

제5조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규제 발굴·평가·개선 등 규제개혁에 관한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시 전체 규제 조정을 총괄하고 규제개혁의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규제 개혁 전담 조직 신설 등을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불편·불합리한 규제의 집중 발굴과 체계적인 관리·개선안 마련을 위하여 규제 개혁 전담 조직 신설 및 사무분장 명시
 - (기획조정실) 규제 조정 및 개혁 총괄을 담당하는 「규제혁신기획관(3급)」을 신설하고, ‘규제 평가·개선 등 규제개혁’ 관련 사항을 사무분장으로 명시

◆ 서울특별시조례 제9651호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의 3급란, 4급란, 5급 이하 소계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급	26	16		1	9	
4급	270	165	19	8	71	7
5급 이하 소계	10,205					

부 칙

이 조례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

1. 개정이유

- 규제개혁 전담 조직의 기구 정원 확보를 위하여 총정원 변동없이 직급 간 정원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규제혁신기획관(3급)」, 「규제개선담당관(4급)」 신설에 따라 총정원 변동없이 직급 조정
- (본청) 3급 +1명, 4급 +1명, 5급이하 △2명

◆ 서울특별시조례 제9652호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5년 5월 19일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규제시책”을 “규제정책”으로, “제3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을 “제3조제3항에서 정한 사항과 그밖에 서울특별시 규제 개혁에 필요한”으로 한다.

제10조를 제18조로 하고, 제4조부터 제9조까지를 각각 제7조부터 제12조까지로 하며, 제2조 및 제3조를 각각 제4조 및 제5조로 하고, 제2조, 제3조 및 제6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를 따른다.

제3조(기본원칙)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규제를 조례·규칙 등에 규정하는 경우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제5조 및 제5조의2를 따라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제척·기피·회피) 위원 해촉, 제척·기피·회피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 및 제9조에 따른다.

제4조(중전의 제2조)의 제목 “(설치 및 기능)”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등)”으로 한다.

제5조(중전의 제3조)제1항 중 “구성한다”를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구성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시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된다”를 “맡는다”로 한다.

제7조(중전의 제4조)제2항 중 “위원장이 부득이한”을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으로, “위원장이 미리”를 “위원장 중 행정1부시장이 미리”로 한다.

제11조(중전의 제8조)제2항 중 “된다”를 “맡는다”로 한다.

제12조(중전의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

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서울특별시 규제총괄관 위촉) ① 시장은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의 전략수립과 규제개혁 정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민간전문가(이하 “규제총괄관”이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규제총괄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민간(기업·언론·연구기관·교육기관·시민단체 등)에서 규제 관련 업무에 전문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규제 관련 석사·박사학위 취득 후 관련 분야에 연구경력이 있는 사람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규제 관련 분야의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변호사 등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5. 사회·경제 관련 단체의 임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6. 3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직에 있었던 사람
7. 그 밖에 규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4조(규제총괄관 업무 등) ① 규제총괄관의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 주요 규제개혁 정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자문
2. 서울특별시 기존규제에 대한 규제정비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자문
3. 불합리한 규제 발굴·검토·개선에 관한 자문
4. 서울특별시 규제입증책임제도와 관련한 자문
5. 규제심사 대상 여부에 대한 사전검토에 관한 자문
6. 규제개혁 추진상황 점검 및 관리에 관한 자문
7. 규제개혁 관련 전문가들과 정보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 자문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② 시장은 규제총괄관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규제총괄관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제3자에게 누설·제공하거나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다.

④ 규제총괄관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에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규제총괄관은 「서울특별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규제총괄관의 임기) 규제총괄관은 비상근직으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6조(규제총괄관의 수당 등)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규제총괄관에게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규제총괄관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규제총괄관을 해촉할 수 있다.

1. 규제총괄관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희망한 경우
2.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규제총괄관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규제총괄관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서울특별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위촉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

1. 개정이유

- 현장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규제 관련 민간전문가를 위촉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현실성 있는 규제개혁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규제총괄관’의 자격기준 등 위촉에 관한 사항
- 나. ‘규제총괄관’의 업무, 수당, 해촉 등에 관한 사항

◆ **서울특별시조례 제9653호**

서울특별시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5년 5월 19일

서울특별시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격년단위”를 “격년 단위”로 한다.

제6조제3호 중 “서울시”를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위원 구성”을 “조직위원회의 위원”으로, “서울총괄건축가 및 시의원”을 “서울총괄건축가(「서울특별시 건축 기본 조례」 제36조에 따라 위촉한 민간전문가를 말한다) 및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으로, “서울의”를 “시의”로, “한다”를 “구성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위원장은”을 “조직위원회의 위원장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조직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이”를 “조직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 및 주관하며, 위원장이 회의에”로, “모두”를 “모두 회의에”로,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이 된다”를 “미리 지명한 위원이 회의를 주관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위원은 임기를”을 “위원의 임기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조직위원회”를 “조직위원회 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정하여 운영할”을 “정할”로 한다.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을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서울시의원”을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서울의”를 “시의”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이”를 “운영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 및 주관하고, 위원장이 회의에”로, “모두”를 “모두 회의에”로,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이 된다”를 “미리 지명한 위원이 회의를 주관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정하여 운영할”을 “정할”로 한다.

3. 미래공간기획관

8. 제11조의 출연기관의 장

제11조의2제4항 중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본문 중 “범위 안” 을 “범위” 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후단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출연기관은 교부받은 출연금을 서울비엔날레 업무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제14조제1항 중 “경우” 를 “경우 출연기관의 장에게” 로, “소속공무원” 을 “소속 공무원” 으로 한다.

제15조 중 “서울시로” 를 “시로” 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업무가 이관되어 관련 조례에 이를 반영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운영위원회 당연직 위원의 구성에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추진에 관한 사항을 분장하는 ‘미래공간기획관’을 추가하고, 직제 순서에 맞게 각 호를 체계적으로 개편(제10조제2항제3호)
- 나. 위원회 구성 조항의 명확한 의미 전달을 위하여 위촉위원 근거 조항 추가 등 어구 수정(제8조, 제10조)
- 다. 용어 약칭 추가(제6조제3호, 제8조제2항, 제10조제2항제9호, 제15조)
- 라. 기타 경미한 사항 수정(제2조, 제11조의2, 제12조, 제14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9654호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지털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지털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5년 5월 19일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지털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지털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AI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첨단”을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첨단”으로, “서울디지털재단을 설립·운영하는 데”를 “서울AI재단을 설립·운영하는 데”로 한다.

제2조 중 “서울디지털재단”을 “서울AI재단”으로,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조제1호 중 “첨단”을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첨단”으로, “정책연구 및 컨설팅”을 “정책연구, 컨설팅, 교육, 문화확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벤처기업”을 “벤처기업(「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을 말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디지털”을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첨단 디지털”로 하며, 같은 조 제8호 중 “법인”을 “재단”으로 한다.

3.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투자출연기관, 시민 대상 인공지능(AI)기술 활용 등 디지털 역량 강화 지원

제9조제3항 중 “부득이 한”을 “부득이한”으로, “기재순”을 “기재 순”으로 한다.

제10조 중 “관한 사항에 대해 자문을 구하기”를 “관한 자문을”로 한다.

제12조 중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를 “시의”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제14조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제16조 중 “서울특별시” 를 “시” 로 한다.

제18조제3항 전단 중 “대하여 재단” 을 “재단” 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 을 “재단의 이사장에게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 으로, “그” 를 “재단의” 로 한다.

제20조 중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 를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 로, “소속공무원” 을 “소속 공무원” 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8호마목 중 “서울디지털재단” 을 “서울AI재단” 으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2호 중 “서울디지털재단” 을 “서울AI재단” 으로 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디지털 분야의 핵심기술로 자리 잡은 인공지능(AI)이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광범위하게 확대되어 서울디지털재단의 역할 재정립이 필요함.
- 이를 위해 서울디지털재단의 기관 명칭을 변경하고, 인공지능(AI) 관련 업무를 재단의 사업에 명시함으로써 기관의 전문성 및 대표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기관 명칭을 ‘서울AI재단’ 으로 변경함(제명, 제1조, 제2조)
- 나. 조례의 목적과 재단의 사업에 인공지능(AI) 관련 내용을 명시함(제1조, 제4조)
- 다. 약칭 용어 수정 등 기타 경미한 사항을 수정함

◆ 서울특별시조례 제9655호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5년 5월 19일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본문 중 “07:00~21:00시” 를 “07:00~21:00” 으로 한다.

제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8호 및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9호 중 “별표1” 을 각각 “별표 1” 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혼잡통행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한다.

1.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배기량 1천cc 미만의 경형 승용 자동차
2. 차량등록지(사용본거지)의 주소지가 혼잡통행료 징수소 소재지인 ‘서울특별시 중구’의 개인소유 자동차(다만, 법인소유 자동차, 임대 자동차 등 개인소유가 아닌 경우는 제외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가. 혼잡통행료 징수 방법이 양방향 징수에서 도심방향만 징수로 변경된 이후 혼잡통행료 징수소 주변 거주민의 필수통행(생활도로) 보장을 위하여 거주민 소유 차량에 대해 혼잡통행료 감경 신설 등 감면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근거한 경형 승용 자동차 혼잡통행료 감경(혼잡통행료의 100분의 50)을 조례에 명시(신설) (제6조제2항제1호)
- 나. 차량등록지(사용본거지)의 주소지가 혼잡통행료 징수소의 소재지인 ‘서울특별시 중구’의 개인소유 자동차에 한하여 혼잡통행료 감경(혼잡통행료의 100분의 50) 신설 (제6조제2항제2호)

◆ 서울특별시조례 제9656호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5년 5월 19일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장의 제목 “생활주변 소규모 배출원 규제 및 지원”을 “휘발성유기화합물 등의 배출원 관리 및 지원”으로 한다.

제21조를 삭제하고, 제20조를 제21조로 하며,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도장시설 관리 및 지원) 시장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도장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에게 대기오염방지시설 유지관리에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1조(중전의 제2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명령”을 “권고”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제2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소규모 배출원에 개인이나 사업자가 대기오염물질 회수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1조(중전의 제20조)의 제목 “(소규모 배출원 규제)”를 “(생활주변 소규모 배출원 관리)”로 한다.

제22조 및 제2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교육 및 홍보 지원 등) 시장은 대기환경개선 우수사례 전파, 관련 교육 및 홍보 등을 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대기환경개선 관련 교육 및 홍보
2. 휘발성유기화합물 함량이 낮은 제품의 사용 활성화 교육 및 홍보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3조(표창) 시장은 대기환경개선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개인, 단체 또는 기업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가. 서울시는 2019년부터 소규모 사업장(도장시설 등) 대기오염 방지시설 지원사업을 추진하다 올해부터 동 사업을 중단하였으나 서울연구원 등은 도장시설에서 배출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관리를 위해서는 방지시설의 설치도 중요하지만, 방지 효율을 유지하기 위한 활성탄 교체 지원 또는 인센티브 제도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권고하고있는바, 조례 개정을 통해 실효성 있는 지원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나. 또한 기존 생활주변 소규모 배출원(세탁소 등)에 관한 규제 조항을 권고로 완화하고, 휘발성유기화합물의 함량이 낮은 제품을 사용하도록 교육·홍보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자동차 도장시설 유지관리 지원 규정을 명시함(제20조)
- 나. 생활주변 소규모 배출원에 대한 규제를 권고로 완화하여 수정함(제21조)
- 다. 대기환경개선 관련 교육·홍보 및 표창 규정을 신설함(제22조, 제23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9657호

서울특별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5년 5월 19일

서울특별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숲길관리청”이란 숲길을 관리하는 서울특별시장·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16조를 제18조로 하고, 제14조 및 제15조를 각각 제15조 및 제16조로 하며, 제12조 및 제13조를 각각 제13조 및 제14조로 하고, 제7조부터 제11조까지를 각각 제8조부터 제12조까지로 하며,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자연휴양림조성계획 승인 등) ① 자연휴양림으로 지정된 산림에 휴양시설의 설치 및 숲가꾸기 등을 하려는 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을 작성 또는 변경 작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의 내용이 자연휴양림 지정 목적에 부합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그 신청을 승인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 승인한 경우에는 자연휴양림의 명칭·위치·면적, 시설물의 종류·규모가 포함된 시설계획, 시설물중합배치도, 연도별 투자계획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승인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사업을 중단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승인을 받은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의 내용대로 사업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승인을 받은 자가 스스로 승인의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제11조(중전의 제1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산림치유지도사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의2, 제14조의2 및 제1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숲길 운영관리) 시장은 법 제23조에 따라 조성된 숲길을 보전하고 이용 및 안전·편의가 증진되도록 관련 법령에 따라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안전하고 편안하게 해당 숲길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4조의2(숲길 주변에서의 금지행위) 누구든지 숲길 또는 주변의 토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숲길을 훼손하는 행위
2. 다른 사람 소유의 건조물·농작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하는 행위
3.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4. 숲길관리청에서 설치한 표지를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망가뜨리는 행위

제17조(사무위임) ① 시장이 구청장 및 공원여가센터소장 등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1과 같다.

② 별표 1에서 “자연휴양림의 조성 및 관리 등”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에 부수되는 사무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사무위임(제17조제1항 관련)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1. 자연휴양림의 조성 및 관리 등		구청장, 동부·중부·서부·북부공원여가센터소장, 서울대공원장, 서울식물원장
가. 자연휴양림의 타당성 평가 및 지정 신청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1조의2	
나. 자연휴양림의 조성계획 수립 및 승인 신청	◦ 같은법 제14조	
다. 자연휴양림 조성(시설 설치) 및 관리	◦ 같은법 제16조, 제16조의2, 제21조의5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가. 자연휴양림 조성계획 승인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휴양시설 설치 및 숲가꾸기 등의 사업추진 세부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나. 숲길 운영관리 측면에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안전하고 편안한 이용을 도모하고자 하며, 숲길을 훼손하는 등 금지행위를 규정하여 시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다. 자연휴양림의 조성 및 관리 등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관련 사무를 구청장 및 공원여가센터 등에 관리 위임할 수 있도록 함.

2. 주요내용

- 가. 자연휴양림조성계획 승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7조)
- 나. 산림치유지도사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의 지원을 규정함(제11조제2항)
- 다. 숲길 운영관리 측면에서 접근성과 안전성을 높이도록 함(제12조의2)
- 라. 숲길 주변에서의 금지행위를 규정함(제14조의2)
- 마. 자연휴양림의 조성 및 관리 등의 사무위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7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9658호

서울특별시 재활용품 수집·관리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재활용품 수집·관리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5년 5월 19일

서울특별시 재활용품 수집·관리인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촉진에 이바지함”을 “촉진 및 환경보호에 기여하고, 나아가 재활용품 수집·관리인의 복지 증진과 안전한 근로 환경 조성”으로 한다.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재활용품 수집·관리인”(이하 “수집·관리인”이라 한다)이란 재활용품을 수집·운반하거나, 주택가 재활용정거장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

1. 지원계획의 목표 및 방향
2. 수집·관리인에 대한 실태조사 및 조사 결과 반영
3.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4. 지원 대상자의 복지 및 안전 대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집·관리인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제4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호(중전의 제4호) 중 “시장”을 “구청장”으로 한다.

4. 연간 또는 월간 재활용품 수집 횟수가 일정 기준 이상인 사람
5. 재산 보유 현황 등을 감안하여 구청장이 우선 선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있으며,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를 “있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9조를 제10조로 하고,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협조체계 구축) ① 시장은 수집·관리인 지원 및 안전 강화를 위하여 자치구와 협조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할 경우 자치구와 협력하여 수집·관리인의 근로환경 개선 및 안전 확보를 위한 공동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가. 서울특별시 재활용품 수집·관리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재활용품 수집·관리인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지원계획 수립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구체화하며, 실태조사 결과를 지원계획에 반영하여 더욱 실효성 있는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자 함.
- 나. 또한, 지원 대상자의 선정 기준을 보완하고, 자치구와의 협조체계 구축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기존 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수집·관리인의 복지 증진과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함과 동시에, 사회적 약자 보호 및 공공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보다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재활용 정책을 실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재활용품 수집·관리인의 정의를 명확히 정비함(제2조제3호)
- 나. 수집·관리인 지원계획 수립 시 포함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강화함(제3조제2항)
- 다. 실태조사 결과를 지원계획에 반영하도록 함(제3조제2항)
- 라.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을 보완함(제4조제4,5호)
- 마. 자치구와 협력할 수 있도록 협조체계 구축 근거를 마련하여 지원체계를 강화함(제9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9659호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5년 5월 19일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부터 제7조의5까지를 각각 제7조의3부터 제7조의6까지로 하고,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양방향 충전 전기자동차 및 충전시설의 개발·보급) 시장은 양방향 충전(충전과 방전을 말한다) 기능을 갖춘 전기자동차 및 충전시설의 개발·보급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의5(충전의 제7조의4) 제3항제1호 중 “전체 충전시설의 100분의 10이상”을 “제2항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충전시설 수량 최소치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전체 충전시설”을 “제2항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충전시설 수량 최소치”로 한다.

제9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위원회는 회의 개최가 필요할 때마다 구성·운영하고, 회의 종료와 함께 자동 해산된다.

제9조제2항제1호 중 “환경, 에너지업무 관련 실·본부 국장”을 “위원회 담당부서의 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을 “위원회의 회의는”으로, “개의회고”를 “개최하고”로 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 구성·운영기간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2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양방향 기능을 갖춘 전기자동차 및 충전시설의 개발·보급 확대를 위한 시장의 역할을 규정하고, 급속충전소 설치의무 주차대수 관련 규정(제7조의4제3항) 중 ‘전체 충전시설’이라는 표현이 해석상 혼란을 초래할 여지가 있어 이를 명확히 하며, 충전료심의위원회 운영을 비상설로 축소함에 따른 위촉위원 임기 규정, 위원회 회의 개최 등의 내용을 수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양방향 충전 전기자동차 및 충전시설의 개발·보급 규정 신설(제7조의2)
- 나. 급속충전시설의 최소 설치의무 주차대수 명시(제7조의5제3항제1호 및 제2호)
- 다. 위원회 비상설화를 위해 안전 발생 시 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으로 변경하는 단서 추가 및 위촉위원 임기 규정 수정(제9조제1항 및 제3항)
- 라. 당연직 위원을 환경, 에너지업무 관련 실·본부 국장에서 담당 부서의 장으로 변경(제9조제2항제1호)
- 마. 위원회 비상설화에 따른 위원장 회의 소집 내용을 삭제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도록 변경(제9조제4항)

◆ **서울특별시조례 제9660호**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5년 5월 19일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중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을 “제1항과 제2항”으로 한다.

② 제1항의 대상사업과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중복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을 제외하고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제27조의 제목 “(협의 절차 등에 관한 특례)”를 “(협의절차 등에 관한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을 “제29조제2항에 따른 심의기준을 충족하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제1호에 해당할 경우 평가서”를 “평가서”로, “협의 절차”를 “협의절차”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민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와 시·도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조례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환경영향평가서 본안 심의 면제 대상을 확대하고 면제 요건을 명확히 하는 등 평가 절차를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민간사업 대상 사업 규정 신설(제4조제2항)
나. 환경영향평가 협의 면제 요건 규정 일부 삭제로 협의 절차 단축(제27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9661호

**서울특별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5년 5월 19일

서울특별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제12조”를 “제13조”로 한다.

제10조의2제2항 중 “병충해”를 “병해충”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병해충 방제를 실시하는 경우 어린이를 포함한 시민이나 반려동물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장소에 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한다”를 “하고,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1명만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국유지에 조성된 도시숲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가.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국유지에 조성된 도시숲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추가함으로써 도시숲을 체계적으로 조성·관리하고자 함.
- 나. 도시숲, 생활숲 등에 병해충 방제를 실시하는 경우 어린이를 포함한 방문 시민과 반려동물 등이 방제지역에서 피해를 입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장소에 그 내용을 사전에 공지하여 예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병해충 방제를 실시하는 경우 시민이나 반려동물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장소에 공지하도록 함(제10조의2제3항 신설).
- 나.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국유지에 조성된 도시숲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추가함(제14조제3항제4호 신설).

◆ 서울특별시조례 제9662호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5년 5월 19일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에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관람 통계 관리) 시장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기반하여 미술관 관람자(무료 관람자를 포함한다) 등의 통계 현황을 관리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현재 서울시 및 서울시 산하 시설의 방문객 및 이용객을 측정하는데 그 수치가 과다측정되는 등 부정확함. 시설 방문객 및 이용객 수치는 해당 시설의 주요 경영 및 성과평가 자료로 사용되기에 해당 시설들의 방문객 및 이용객 측정을 정확하게 하여 이를 토대로 시설 성과평가도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시장이 미술관 관람객을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기반하여 측정하고 통계 현황을 관리하도록 함.(제10조의2 신설)

◆ 서울특별시조례 제9663호

서울특별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5년 5월 19일

서울특별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의2(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시행계획 수립·시행) ① 시장은 법 제5조의3에 따라 서울특별시에 위치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정책 추진의 기본 방향
2. 박물관 및 미술관의 역량강화 방안
3. 박물관 및 미술관의 관람 활성화 방안
4. 그밖에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

1. 개정이유

- 서울특별시 박물관 및 미술관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및 동 시행령에 따라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규정이 명시되지 않아 핵심 정책의 공백 등이 우려되어 이를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박물관 및 미술관의 진흥 시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세부 내용을 신설(제3조의2제2항)

◆ 서울특별시조례 제9664호

**서울특별시 전통문화 보존·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전통문화 보존·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5년 5월 19일

서울특별시 전통문화 보존·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 본문 중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라”에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전통문화산업진흥법」에 따라”로 한다.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전통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전통문화의 체계적인 활용 방안을 마련하여 관련 기관·법인·단체·개인이 전통문화를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6조의 제목 “(관광자원화 개발지원)”을 “(전통문화 개발지원)”으로 하며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광자원화 사업”을 “전통문화산업 개발”로 하고, 같은 조 제3호의 “관광자원화”를 “전통문화산업 진흥”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2024년 9월부터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제정·시행됨에 따라 기존 개별적으로 육성 중이던 전통문화산업을 탈피하고 전통문화의 가치 확산과 종합적인 발전을 위하여, 전통문화의 계승 및 발전 지원과 관련된 사항을 추가하고 서울시가 보유한 전통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함.
- 특히, 고부가가치 한류 산업의 일환으로 전통문화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정부 기조에 발맞춰, 서울특별시가 전통문화유산 관광자원화에서 전통문화의 진흥으로 목적의 범위를 확장하여, 관광을 포함 교육, 콘텐츠 등 전통문화를 계승한 전 분야의 산업을 지원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2. 주요내용

- 가. 관련 상위 법 제정 및 시행으로 목적 개정(제1조)
- 나. 시장의 책무 중 전통문화의 계승 및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한 조항 개정(제3조)
- 다. 전통문화의 진흥을 위한 개발지원으로 조항 개정(제6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9665호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5년 5월 19일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연차보고) 시장은 매년 관광진흥종합계획에 따른 시책과 동향에 대한 보고서를 서울특별시의회 제1차 정례회의가 시작하기 전까지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관광은 일상을 벗어나 여가와 삶의 전환을 위해 다른 지역이나 나라로 여행하는 것을 이야기함. 여행의 흐름에 있어 여행객의 취향 또한 사회·문화·경제적 여건에 따라 수시로 변화하고 있음. 이에 한국관광공사는 매년 올해 관광트렌드를 발표하는 등 변화무쌍한 여행객의 관광 수요를 파악해 니즈에 부합한 관광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
- 특히, 정부는 「관광기본법」에 따라 매년 관광진흥에 대한 연차보고를 정기국회가 시작하기 전까지 제출하여 새로운 관광 변화에 대하여 정부의 대응 등 주요 정책을 매년 의회가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기에 우리나라 관광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서울 관광의 시책과 동향에 대해서도 의회가 정례적인 보고를 받을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2. 주요내용

- 가. 관광 시책 및 동향에 대한 시장의 보고 사항 신설(제6조의2).

◆ 서울특별시조례 제9666호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5년 5월 19일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문화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문화기본법」”으로, “같은 법 시행령에
서”를 “「지역문화진흥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는 2006년 7월에 제정되어 현재까지 서울시 각종 문화예술정책의 근거 규정으로서의 역할을 해 왔음.
- 다만, 제1조 목적 조항에서 상위법령으로 「지역문화진흥법」을 명시하지 않고 있어 관련 개정사항을 적기에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따라서 현재 명기된 「문화기본법」 및 「문화예술진흥법」 외 「지역문화진흥법」을 추가함으로써 서울 지역 고유의 특색 있는 문화를 발전시키는 데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제1조(목적)에 「지역문화진흥법」 추가

◆ 서울특별시조례 제9667호

서울특별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5년 5월 19일

서울특별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시장은 장애예술인 관련 단체가 서울특별시 관내 문화시설을 대관하고자 할 때 대관심사 시가산점을 적용할 수 있으며, 대관료를 100분의 50 이내에서 할인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시장은 장애예술인이 지속적으로 문화예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돼 있음.
- 특히 장애예술인은 안정적으로 문화 예술 활동에 참여하기 어려워 개인 활동보다는 단체 활동을 통해 문화예술 활동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서울의 경우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무대가 한정되어 늘 공연장 대관에 어려움을 겪고, 열악한 재정 상황으로 대관료 납부에도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실정임.
- 이에 장애예술인들의 창작과 문화예술 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장애예술인 단체가 서울특별시 관내 문화시설을 대관하고자 할 때, 대관 순위에 우선권을 주고, 대관료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장애예술인 관련 단체가 서울특별시 관내 문화시설의 공연장을 대관하고자 할 때 대관 심사 시 가산점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대관료의 100분의 50 내에서 할인할 수 있게 하는 단서를 신설함(제9조제2항)

◆ 서울특별시조례 제9668호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설립·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설립·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5년 5월 19일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설립·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의 제목 “대관심의회”를 “대관심의회 및 대관 특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사장은 장애예술인 단체가 대관하고자 할 때 대관심사 시 가산점을 적용할 수 있으며, 대관료를 100분의 50 이내에서 할인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시장은 장애예술인이 지속적으로 문화예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돼 있음.
- 특히 장애예술인은 안정적으로 문화 예술 활동에 참여하기 어려워 개인 활동보다는 단체 활동을 통해 문화예술 활동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서울의 경우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무대가 한정되어 늘 공연장 대관에 어려움을 겪고, 열악한 재정 상황으로 대관료 납부에도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실정임.
- 이에 장애예술인들의 창작과 문화예술 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장애예술인 단체가 서울을 대표하는 공연장인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공연장을 대관하고자 할 때, 대관 순위에 우선권을 주고, 우선순위 부여 규정을 대관심의 시 가산점을 적용할 수 있도록 변경하여, 대관료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장애예술인 관련 단체가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의 공연장을 대관하고자 할 때 대관심사 시 가산점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대관료의 100분의 50 내에서 할인할 수 있게 하는 단서를 신설함(제6조의2제4항).

◆ 서울특별시조례 제9669호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5년 5월 19일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설치·운영하는데”를 “설치·운영하기 위해”로,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을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으로 한다.

제2조 중 “별표1”을 “별표 1”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질높”을 “질 높”으로, “관리·운영”을 “관리·운영(이하 운영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관리·운영을”을 “운영을”로, “관리·운영(이하 “운영”이라 한다)함”을 “운영함”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자(이하)”를 “자(이하)”로 한다.

제4조의2제2항제2호 중 “진행중”을 “진행 중”으로 한다.

제5조제3항제1호 본문 중 “체육경기:”를 “체육경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체육 행사:”를 “체육행사:”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공공행사:”를 “공공행사:”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문화예술행사:”를 “문화예술행사:”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일반행사:”를 “일반행사:”로 한다.

제5조의2제1항제1호 중 “서울특별시가”를 “시가”로 한다.

제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5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4(잔디 보호를 위한 사용 제한) ① 시장은 체육시설의 잔디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1. 잔디보호를 위해 사전에 정한 휴식 기간에 해당하는 경우
2. 동일 기간 내 과도한 사용 또는 행사로 잔디 훼손이 우려되는 경우
3. 행사 또는 경기의 내용·규모·방식 등으로 잔디 손상이 우려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강우, 폭염, 한파 등 기상 악화로 잔디 유지관리가 어려운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잔디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잔디 보호를 위해 행사 주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1. 행사·공연 시 잔디 보호 및 이행계획서 제출
2. 잔디 훼손 시 원상복구 계획 수립 및 복구
3. 그 밖에 시장이 잔디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③ 사용자는 잔디 보호를 위한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제12조에 따른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제6조제1항제1호가목 중 “조기 :” 를 “조기:” 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주간 :” 을 “주간:” 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야간 :” 을 “야간:” 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조기 :” 를 “조기:” 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주간 :” 을 “주간:” 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야간 :” 을 “야간:” 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2호 후단 중 “주간사용시간” 을 “주간 사용시간” 으로 한다.

제7조제4항제1호 중 “성 인 :” 를 “성인:” 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청소년 :” 를 “청소년:” 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어린이 :” 를 “어린이:” 로 한다.

제8조제2항제1호 중 “문화예술행사 :” 를 “문화예술행사:” 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일반 행사 :” 를 “일반행사:” 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다만,” 을 “다만, 제5조제3항제4호에 따른” 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2호 중 “주최측” 을 “주최 측” 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후단 중 “수급자 :” 를 “수급자,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제대군인:” 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이용자 :” 를 “이용자:” 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서울특별시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임산부 본인: 면제

제10조제1호가목 중 “5·18민주유공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을 “5·18민주유공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으로,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을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으로, “본인 :” 을 “본인:” 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본문 중 “이용자 :” 를 “이용자:” 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자 :” 를 “자,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제대군인:” 으로 하고, 같은 호 마목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호가목 중 “가족, 「장애인복지법” 을 “가족, 「장애인복지법” 으로, “5·18민주유공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을 “5·18민주유공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으로,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을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으로, “본인 :” 을 “본인:” 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차상위계층 및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를 “차상위계층 및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로, “자 :” 를 “자:” 로 하며, 같은 호 바목을 삭제한다.

제11조제2항제1호가목 중 “당일 :” 를 “당일:” 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10일전 :” 를 “10일전:” 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5일전 :” 를 “5일전:” 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1일전 :” 를 “1일전:” 로 하며,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60일전 :” 를 “60일전:” 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30일전 :” 를 “30일전:” 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20일전 :” 를 “20일전:” 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10일전 :” 를 “10일전:” 로 하며, 같은 항 제3호가목 중 “20일전 :” 를 “20일전:” 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15일전 :” 를 “15일전:” 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10일전 :” 를 “10일전:” 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5일전 :” 를 “5일전:” 로 하며, 같은 호 마목 중 “1일전 :” 를 “1일전:” 로 한다.

제11조의2제2항제1호 중 “60일전 :” 를 “60일전:” 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30일전 :” 를 “30일전:” 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20일전 :” 를 “20일전:” 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10일전 :” 를 “10일전:” 로 한다.

제12조제2항제1호 중 “위해발생시” 를 “위해가 발생할 때” 로 한다.

제14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사용자는 행사로 체육시설 잔디의 훼손이 예상되는 경우, 시장이 정하는 잔디 보호조치를 이행하여야 하며, 잔디 훼손이 발생한 경우 훼손된 부분의 현황 신고 및 복구·보수를 위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입장료 및 사용료 감면에 관한 적용례) 목동실내빙상장에 대해서는 2026. 1. 1.부터 제9조 제3항제1호 및 제10조제1호다목에 따른 장기복무 및 중기복무 제대군인 감면을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시립체육시설 중 잔디가 식재된 시설에 대하여 잔디 보호를 위한 사용제한 기준과 이를 이용하는 사용자가 이행해야 하는 잔디 보호를 위한 사전·사후 관리 조치를 명시함으로써 시설의 잔디가 적절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함.
- 장기간 국가를 위해 명예로운 헌신을 일군 장기복무 및 중기복무 제대군인을 시립체육시설 이용 요금 할인 대상에 명시하여 서울시 차원에서 병역에 대한 존중과 예우를 강화하여 이들의 체육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체육시설 잔디 보호를 위해 특정 조건에서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함(제5조의4제1항).
- 나. 행사주최자의 잔디 보호를 위한 사전·사후 관리 조치 이행사항을 규정함(제5조의4제2항).
- 다. 체육시설 입장료 및 개인연습사용료 감면대상에 장기복무 및 중기복무 제대군인을 추가함(제9조제3항제1호, 제10조제1호다목).
- 라. 체육시설 사용자는 잔디 보호를 위한 운영지침을 준수하고, 잔디 훼손 시 훼손 현황 신고 및 복구·보수 조치를 이행하도록 규정함(제14조제4항).

◆ 서울특별시조례 제9670호

서울특별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5년 5월 19일

서울특별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3월~10월) :” 을 “(3월~10월):” 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11월~다음해 2월) :” 을 “(11월~다음해 2월):” 로 한다.

제5조제1항제18호 및 제19호를 각각 제19호 및 제20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제대군인 제17조제1호 중 “기본시설 :” 을 “기본시설:” 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부속시설 :” 을 “부속시설:” 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

1. 개정이유

- 장기간 국가를 위해 명예로운 헌신을 일군 장기복무 및 중기복무 제대군인을 서울특별시립박물관 관람료 면제 대상으로 명시하여 서울시 차원에서 병역에 대한 존중과 예우를 강화하여 이들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관람료 면제 대상으로 장기복무 및 중기복무 제대군인을 추가함(제5조제1항제18호 신설).

◆ 서울특별시조례 제9671호

서울특별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5년 5월 19일

서울특별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조(손실보상) 시장은 법 제70조에 따라 손실을 입은 자에게 법 제70조의2의 손실보상심의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가. 동 조례의 상위법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는 동법상의 여러 감염병 관리, 조치 등으로 인해 손실을 입은 자에게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는 ‘의무규정’을 명시하고 있음.
- 나. 그런데, 현행 조례 제28조의 ‘손실보상 규정’은 상위법과 달리 손실을 입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여 상위법과 정합성이 맞지 않고, 상위법에 없는 ‘예산의 범위’라는 제한을 추가적으로 두고 있음.
- 다. 그리고 이는 서울시가 현행 조례에 근거하여 상위법과 달리 감염병 관리 조치 등으로 인한 손실을 ‘예산 사정’에 따라 가변적으로 보상할 수 있다고 잘못 해석할 소지가 있어 개정이 필요함.

2. 주요내용

- 가. 현행 조례 제28조 상의 손실보상 규정을 상위법 제70조의 손실보상 규정에 부합하게 정비함.(제28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9672호

서울특별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5년 5월 19일

서울특별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7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시장” 을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 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가. 「주차장법」 제6조의 3(주차장에서의 금지행위) 신설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 내 취사행위가 금지됨에 따라 음식판매 자동차 영업장소 중 노외주차장으로서 시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을 제외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 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중 노외주차장으로서 시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을 제외함(제2조제1항제7호)

◆ 서울특별시조례 제9673호

서울특별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5년 5월 19일

서울특별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시장은 마약류 관련 치료보호 또는 치료감호가 종료된 사람의 사회복귀 및 재활을 위한 사후 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6조제2항제2호 중 “지역사회기반”을 “사후관리체계 구축, 지역사회기반”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는 치료보호 또는 치료감호가 종료된 사람의 사회복귀 및 재활을 위한 사후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되어 있음.
- 나. 이에 치료보호 또는 치료감호가 종료된 사람의 사회복귀 및 재활을 위한 사후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시장의 책무에 마약류중독자의 사후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사항 추가(제3조제2항)
- 나. 마약관리센터의 설치·운영에 사후관리체계 구축 사항 추가(제6조제2항)

◆ 서울특별시조례 제9674호

서울특별시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5년 5월 19일

서울특별시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식품 등에 마약류 및 이와 유사한 표현(「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3제2항에 따른 표시·광고를 말한다)을 사용한 표시 또는 광고 변경 권고

제8조를 제9조로 하고,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비용의 지원) ① 시장은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라 식품 등에 이미 사용하고 있는 마약류 및 이와 유사한 표현의 표시 또는 광고를 변경하려는 영업자 등에게 「식품위생법」 제89조에 따른 식품진흥기금으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가. 마약은 중독성과 유해성으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나 식품명칭 또는 상호명에 사용되고 있어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저해할 수 있으며 특히 아동과 청소년에게 마약에 대한 이미지가 친화적으로 비쳐질 수 있음.
- 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는 시·도지사는 영업자 등에게 마약류 및 이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한 표시 또는 광고를 하지 아니하도록 권고할 수 있고,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다. 이에 마약류 관련 표현이 포함된 문구의 무분별한 사용을 줄이고, 변경하려는 영업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식품 등에 마약류 및 이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한 표시 또는 광고 변경 권고 (제7조제1항제4호)
- 나. 식품 등에 이미 사용하고 있는 마약류 및 이와 유사한 표현의 표시 또는 광고를 변경하려는 영업자 등에게 식품진흥기금으로 필요한 비용 지원(제8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9675호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5년 5월 19일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7제1항 중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가 본인의 결혼 준비를 위해 서울시”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울특별시”로, “서울시 공공시설을 대관할 경우 대관료의”를 “시설의 대관료”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결혼하는 경우
2.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자녀가 결혼하는 경우
3. 서울특별시 소재 학교 또는 직장에 다니는 사람(자영업자 포함)이 결혼하는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

1. 개정이유

- 가. 결혼식 공공예식장 대관료 감면 지원 대상을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뿐 아니라 서울특별시를 생활권으로 하는 대상으로 확대하여 새롭게 시작하는 신혼부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려고 함.

2. 주요내용

- 가. 공공예식장 대관료 감면 대상을 기존의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포함,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자녀가 결혼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소재 학교 또는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 결혼하는 경우로 확대(제4조의7)

◆ 서울특별시조례 제9676호

서울특별시 호스피스 · 완화의료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호스피스 · 완화의료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5년 5월 19일

서울특별시 호스피스 · 완화의료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작성한 것을 말한다.

제5조제1항 중 “수립”을 “5년마다 수립”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포함한다”를 “포함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7조에 따른 사업

- ④ 시장은 종합계획의 수립 ·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치구, 공공기관, 관련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제1항 중 “실시할 수 있다”를 “실시하고 이를 종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7조제1항제6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문화 확산에 관한 사업

7.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확대를 위한 사업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가. 시장에게 실태조사를 반영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의무화하여 호스피스·완화의료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자 함
- 나. 호스피스 활성화와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사업을 구체화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 수용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웰다잉 문화조성과 확산을 위해 정의 규정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신설함(제2조)
- 나.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사업을 포함하게 함(제5조)
- 다. 실태조사를 강제하고 종합계획에 반영하게 함(제6조)
- 라. 사업을 구체적으로 신설하여 추진 범위를 확대하고 명확하게 함(제7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9677호**

서울특별시 재난안전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재난안전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5년 5월 19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안전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안전산업”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기술·장비·시설·제품 등을 개발·생산·유통하거나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2. “재난안전기술”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재난관리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각종 기술을 말한다.
3. “재난안전제품”이란 재난안전기술을 이용한 각종 제품을 말한다.

제3조(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난안전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종합계획 등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재난안전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난안전산업의 중장기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2. 재난안전산업의 현황 분석 및 개선방안에 관한 사항
3. 재난안전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4.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한 자원 확보에 관한 사항
5. 재난안전산업 관련 교육, 홍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재난안전산업의 진흥을 위해 재난안전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

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재난안전산업 진흥 사업) ① 시장은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재난안전신기술 실증실험 및 기술경연
 2. 재난안전기술, 재난안전제품 및 관련 서비스 개발
 3. 재난안전제품의 표준화 및 상표 개발
 4. 재난안전산업 관련 교육 및 홍보
 5. 재난안전 대응 공간·제품·시각·미디어·서비스 등 안전디자인 개발 및 품질평가
 6. 그 밖에 재난안전산업의 진흥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과 관련된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대해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③ 그 밖에 재난안전산업 진흥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7조(실증실험) ① 시장은 재난안전 기술 및 제품의 실증을 위해 관련 재난안전 기술 및 제품을 공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홈페이지 등을 통해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실증실험을 통해 성능이 검증된 기술 및 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③ 시장은 실증실험 결과를 활용하여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6조에 따른 재난안전제품의 인증을 지원할 수 있다.
- ④ 그 밖에 실증실험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8조(재난안전산업진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재난안전산업 진흥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재난안전산업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4조에 따른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재난안전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재난안전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영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재난안전산업진흥시설의 지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제6조에 따른 재난안전산업 진흥 사업에 관한 사항
 2. 기반시설의 혁신적 기술 발굴·적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2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안전실장과 위촉직 위원 중 위원회에서 호선된 사람이 공동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임명직 위원: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위촉직 위원

가. 서울특별시의회의 의원

나. 행정안전부에서 재난안전산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다. 재난안전산업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 재난안전 관련분야를 전공하고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던 사람

마. 그 밖에 시장이 재난안전산업 진흥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중 재난안전실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시장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촉직 위원에게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새로이 시작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제척·기피·회피) 위원의 해촉·제척·기피·회피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 및 제9조에 따른다.

제13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안전산업 업무 담당 부서장이 맡는다.

제14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재난안전산업 진흥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련 기관·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

2. 제6조에 따른 재난안전산업 진흥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구체적인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5조(포상) 시장은 재난안전산업의 진흥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기관·법인·단체를 포상할 수 있다.

제1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제정이유

- 재난안전산업 시장의 성장과 발전 잠재력을 감안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재난안전 산업 기반 조성 및 지원체계 마련을 위해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실태조사, 재난안전 진흥사업, 위원회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서울특별시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4조).
- 나. 재난안전산업에 대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5조).
- 다. 재난안전산업 진흥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6조).
- 라. 재난안전 기술 및 제품의 실증실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7조).
- 마. 서울특별시 재난안전산업진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8조).
- 바. 재난안전산업진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9조 및 제10조).
- 사. 위원의 임기 및 해촉·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1조 및 제12조).
- 아. 재난안전산업 진흥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4조).
- 자. 재난안전산업의 진흥에 기여한 공적에 대한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5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9678호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5년 5월 19일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지급금액: 고등학생은 「서울특별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표에서 정한 고등학교 수업료 연액의 이내로 하고, 대학생은 고등학교 수업료 연액의 200퍼센트 이내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

1. 개정이유

-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 지원 지급금액 기준인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6이 삭제됨에 따라 장학금 지원 기준금액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장학금 지원 지급금액 기준 마련(제19조제1항제3호)

◆ 서울특별시조례 제9679호

서울특별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5년 5월 19일

서울특별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자가 거주하는 주택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주택용 소방시설의 우선 설치대상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도 포함하도록 하여 화재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함

2. 주요내용

- 가. 주택용 소방시설의 우선 설치대상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자가 거주하는 주택을 포함 (제3조제1항제4호)

◆ 서울특별시조례 제9680호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5년 5월 19일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4조에 따른 재난안전신기술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현행 조례가 인용하고 있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른 '방재신기술'이 삭제되면서 ' 22.1월 제정된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4조에 따른 '재난안전신기술' 로 대체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가 자문하는 건설공사 적용 신기술 중 '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른 방재신기술' 을 '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4조에 따른 재난안전신기술' 로 변경함(제5조제2항제2호나목).

◆ 서울특별시조례 제9681호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5년 5월 19일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굴착영향범위”란 법 제14조 및 법 제23조에 따른 지하안전평가에서 설정한 지하개발의 영향을 받는 인근지역의 범위를 말한다.

제12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시장은 법 제14조의 지하안전평가 또는 법 제23조의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실시 대상의 지하개발이 시행되는 동안 굴착영향범위 내에서 지반이나 시설물의 중대한 변형이 발견되거나 이와 관련한 신고 또는 민원이 접수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현장(지하개발 공사장을 포함한다)을 확인하고 일시적인 공사 중지 또는 주변 도로의 교통통제 여부 등을 검토하여 신속히 조치하거나 관계기관에 협조 요청하여야 한다.
- ⑤ 제4항에서 지반이나 시설물의 중대한 변형의 판단기준은 시장이 정한다.
- ⑥ 시장은 제4항에 따라 일시적인 공사 중지 또는 주변 도로의 교통통제를 한 경우 관계 전문가와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공사 또는 통행 재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지하개발이 시행되는 동안 굴착영향범위 내에서 지반이나 시설물의 중대한 변형이 발견되거나 이와 관련한 신고 또는 민원이 발생했을 때는 즉시 현장(지하개발 공사장 포함)을 확인하고 일시적인 공사중지 또는 주변 도로의 교통통제 여부 등을 검토하여 신속히 조치하거나 관계기관에 협조 요청토록 하여 땅꺼짐으로부터 시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굴착영향범위”를 법 제14조 및 법 제23조에 따른 지하안전평가에서 설정한 지하개발의 영향을 받는 인근지역의 범위로 정의함(제2조제8호)
- 나. 시장은 지하개발이 시행되는 동안 굴착영향범위 내에서 지반이나 시설물의 변형이 발견되거나 신고·민원이 접수된 경우,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필요 시 공사중지 또는 도로 교통통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제12조제4항)
- 다. 지반이나 시설물의 중대한 변형 판단기준을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르도록 함(제12조제5항)
- 라. 공사 중지 또는 도로의 교통통제를 한 경우, 관계 전문가와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공사 또는 통행 재개 여부를 결정토록 함(제12조제6항)

◆ 서울특별시조례 제9682호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2025년 5월 19일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3(노후하수관로 관리계획 수립) ① 시장은 노후하수관로(설치 후 30년이 경과한 하수관로를 말한다)로 인한 지반침하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후하수관로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하여 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정비계획에 따른 예산을 확보하여 단계적으로 정비를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주요 내용과 정비계획을 공개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

1. 개정이유

- 노후 하수관로로 인한 지반침하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실태조사 결과를 정비계획에 반영하고, 이를 시민에게 공개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노후 하수관로로 인한 지반침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30년 이상된 하수관로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및 정비계획 수립·시행을 실시할 수 있도록 일부개정함.(제6조의3제1항)

◆ 서울특별시조례 제9683호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5년 5월 19일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동체 활성화의 지속성과 자율추진 강화를 위한 실태조사 및 정책 개발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에서 규정하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이하 “소규모 공동주택”이라 한다)에 있어 최근 재난 및 재해 우려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문제의 대응과 주민 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한 기존 조례의 일부 개선 필요

2. 주요내용

- 가. 공동체 활성화의 지속성과 자율추진 강화를 위한 실태조사 및 정책 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제6조1호)

◆ 서울특별시조례 제9684호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5년 5월 19일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중 “법 제13조”를 “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로, “교통약자서비스”를 “교통약자서비스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5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중전의 제4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3항”으로 한다.

5. 성폭력 예방교육

③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택시운수종사자는 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시장이 실시하는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교통약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과 이동 편의 증진을 강화하여, 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교통사업자 및 택시운수종사자 등 관련 종사자들이 교통약자 서비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교육을 의무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교육 관련 법적 근거를 법 및 시행규칙으로 확대 명시 (제19조제1항)

－ 교통약자 서비스 교육을 법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의무화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

나. 성폭력 예방교육 신설 (제19조제2항)

－ 교통약자 서비스 교육에 ‘성폭력 예방교육’을 추가하여, 교통약자들의 안전을 강화

다. 택시운수종사자 교육 대상 포함 (제19조제3항 신설)

－ 택시운수종사자도 교통약자 서비스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여, 택시 이용 시 교통약자에게도 안전하고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규정

◆ 서울특별시조례 제9685호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5년 5월 19일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제8호 및 제9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서울공공자전거 앱”이란 서울공공자전거 회원가입 및 기본요금 결제, 무인 대여 반납 서비스 이용 등이 가능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말한다.

제12조의2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시장은 이용 시민이 공공자전거 대여 시 통행원칙과 운전자 준수사항을 인지할 수 있도록 서울공공자전거 앱에 자전거 관련 교통법규를 반드시 표출하여야 한다.
- ⑤ 시장은 민간 공공자전거 앱(공공자전거 이용 시민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시와 협력을 통해 연계한 민간 플랫폼 사의 앱을 말한다.)에 자전거 관련 교통법규가 표출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가. 도로교통공단 통계에 따르면, 자전거 관련 교통사고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임. 특히 자전거 이용자들이 이용 시 준수해야 할 교통법규와 안전 수칙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운행함으로써 보행자 및 차량 운전자와의 충돌 위험이 증가하고 있음
- 나. 이에 공공자전거 대여 시 이용자가 준수해야 할 자전거 통행원칙과 운전자 준수사항 등의 교통법규를 확실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해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공공자전거의 올바른 이용 문화 정착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서울공공자전거 앱의 정의를 신설함(제2조제7호)
- 나. 공공자전거 앱에서 대여자가 자전거 통행원칙과 운전자 준수사항 등 자전거 관련 교통법규를 인지하도록 안내해야 함을 규정함(제12조의2제4항)
- 다. 서울시와 협약한 민간이 개발 및 운영 중인 공공자전거 앱에서도 자전거 관련 교통법규를 안내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자 함(제12조의2제5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입법예고]

◆ 서울특별시교육청공고 제2025-169호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입법예고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5월 19일

서울특별시교육감

1. 개정이유

- 가. 학생과 학교지원기능 강화 및 교육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조직체계 구축을 위한 2025. 7. 1.자 조직개편 사항 반영
- 나. 학교에 다가가는 협력행정 실현 등을 위한 교육지원청의 기능 조정, 부서 신설 및 명칭 변경 사항 등 반영
- 다. 청사이전추진단의 사무분장 정비를 통해 업무 추진의 명확성 확보 등

2. 주요내용

- 가. 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 및 행정지원국 내 과 직제 조정, 명칭 변경 및 사무 조정 등(안 제58조 ~ 제59조)
 - － 교육지원국 내 과 직제를 초등교육지원과, 중등교육지원과, 학교생활교육과 및 학생맞춤협력과 순으로 조정
 - － 행정지원국 내 과 직제를 행정지원과, 학교통합지원과, 재정지원과, 평생교육건강과 및 학교시설지원과 순으로 조정
- 나. 행정지원국 내 학교통합지원과 신설에 따라 교육지원청의 일부 사무 조정(안 제58조)
- 다. 청사이전추진단 분장사무 중 ‘교직원 치유·회복 연수원 건립에 관한 사항’ 삭제(안 제11조)

3. 의견 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의견 제출자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등
- 나.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다. 제출방법

○ 우편: 서울특별시 종로구 송월길 48, 서울시교육청 10층 행정관리담당관 (우 03178)

○ 이메일: bmw7289@sen.go.kr (※ 문의: 전화 02-2282-8643)

4. 개정규칙안: 붙임 참조

서울특별시교육규칙 제 호**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6항제30호를 제31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0. 학생맞춤통합지원에 관한 사항

제9조제5항제43호 및 제44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45호부터 제52호까지를 각각 제52호부터 제59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45호부터 제5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5.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업무 총괄·기획

46. 서울특별시교권보호위원회 구성·운영

47. 지역 교권보호위원회 총괄

48. 교육활동 침해예방 및 대응 기획·운영

49. 교원 정신(마음)건강 증진 기획·운영

50. 교육활동보호 법률지원 총괄·기획

51.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 대응 총괄

제10조제7항에 제2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1. 유보통합 관련 어린이집 장애 영유아 통합지원

제11조제7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58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교육지원국에 초등교육지원과, 중등교육지원과, 학교생활교육과 및 학생맞춤협력과를 둔다.

② 초등교육지원과장 및 중등교육지원과장은 장학관으로, 학교생활교육과장 및 학생맞춤협력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 또는 장학관으로 보한다

제58조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중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학교통합지원센터장”을 “학교생활교육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학생인권 및 교권보호”를 “학생인권 교육 및”으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 및 제12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13호부터 제2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교육활동보호 업무 총괄·기획

13. 교육활동 침해사안 상담 및 행정심판, 소송에 관한 사항

14. 교육활동보호 법률지원·전담변호사 운영

15. 지역 교권보호위원회 구성·운영

16.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 조사·대응

17.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지원

18. 생활교육위원회 운영 지원

19. 생활교육 지원단 및 생활교육법률지원단 운영

20. 지역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운영

제58조제6항(중전의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협력복지과장”을 “학생맞춤협력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5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14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15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16호부터 제18호까지를 각각 제17호부터 제19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운영

제58조제3항(중전의 제5항)에 제17호 및 제1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유보통합 교육과정 업무에 관한 사항

18.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59조제1항 중 “행정지원과”를 “행정지원과, 학교통합지원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지원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를 “행정지원과장, 학교통합지원과장 및”으로, “지방기술서기관이나 지방공업사무관”을 “지방공업사무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학교통합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활동·행정지원 업무 총괄·기획
2. 학교통합지원에 관한 사항 및 콜센터 운영
3. 학교지원업무 발굴 및 모니터링
4. 학교인력채용 지원에 관한 사항
5. 교원 정기승급 및 호봉 획정에 관한 사항
6. 교과서 수급관리
7. 교육공무직원의 인사노무관리
8. 재난관리에 관한 사항
9. 등하굣길(통학로) 교통안전 사업
10. 통학버스 운영지원 및 안전점검(학원 제외)
11. 학교 CCTV 관리 지원
12. 산업안전보건 및 중대재해 업무지원
13. 그 밖의 학교행정업무 경감에 관한 사항

제59조제5항(중전의 제4항)제7호, 제9호부터 제12호까지 및 제19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2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0. 유보통합 행·재정 업무에 관한 사항

부 칙

이 규칙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8조(기획조정실) ① ~ ⑤ (생략)	제8조(기획조정실)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학생맞춤지원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⑥ ----- -----.
1. ~ 29. (생략)	1. ~ 29. (현행과 같음)
<u><신 설></u>	<u>30. 학생맞춤통합지원에 관한 사항</u>
<u>30. (생략)</u>	<u>31. (현행 제30호와 같음)</u>
⑦ · ⑧ (생략)	⑦ · ⑧ (현행과 같음)
제9조(교육정책국) ① ~ ④ (생략)	제9조(교육정책국)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초등교육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⑤ ----- -----.
1. ~ 41. (생략)	1. ~ 41. (현행과 같음)
42. 삭 제	
<u>43.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u>	<u><삭 제></u>
<u>44. 교육활동보호센터 운영</u>	<u><삭 제></u>
<u><신 설></u>	<u>45.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업무 총괄 · 기획</u>
<u><신 설></u>	<u>46. 서울특별시교권보호위원회 구성 · 운영</u>
<u><신 설></u>	<u>47. 지역 교권보호위원회 총괄</u>
<u><신 설></u>	<u>48. 교육활동 침해예방 및 대응 기획 · 운영</u>

<신 설>

<신 설>

<신 설>

45. ~ 52. (생 략)

⑥·⑦ (생 략)

제10조(평생진로교육국) ① ~ ⑥
(생 략)

⑦ 특수교육과장은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분장한다.

1. ~ 20. (생 략)

<신 설>

제11조(교육행정국) ① ~ ⑥ (생
략)

⑦ 청사이전추진단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 2. (생 략)

3. 교직원 치유·회복 연수원
건립에 관한 사항

4. ~ 6. (생 략)

제58조(교육지원국) ① 교육지원
국에 학교통합지원센터, 교육협
력복지과, 초등교육지원과 및
중등교육지원과를 둔다.

49. 교원 정신(마음)건강 증진
기획·운영

50. 교육활동보호 법률지원 총
괄·기획

51.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
대응 총괄

52. ~ 59. (현행 제45호부터
제52호까지와 같음)

⑥·⑦ (현행과 같음)

제10조(평생진로교육국)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
-----.

1. ~ 20. (현행과 같음)

21. 유보통합 관련 어린이집 장
애 영유아 통합지원

제11조(교육행정국) ① ~ ⑥ (현
행과 같음)

⑦ -----
-----.

1. · 2. (현행과 같음)

<삭 제>

4. ~ 6. (현행과 같음)

제58조(교육지원국) ① 교육지원
국에 초등교육지원과, 중등교육
지원과, 학교생활교육과 및 학
생맞춤협력과를 둔다.

② 학교통합지원센터장 및 교육협력복지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 또는 장학관으로, 초등교육지원과장 및 중등교육지원과장은 장학관으로 보한다.

③ 학교통합지원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활동·행정지원 업무 총괄·기획 및 통합지원 콜센터 운영

2. · 3. 삭 제

4. 보결담당 시간강사·행정단체 인력풀 구성에 관한 사항

5. 교원 호봉 재획정에 관한 사항

6. ~ 8. (생략)

9. 학생인권 및 교권보호 지원에 관한 사항

10. 학교 통합지원에 관한 사항

11. (생략)

12. 그 밖의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신 설>

<신 설>

<신 설>

② 초등교육지원과장 및 중등교육지원과장은 장학관으로, 학교생활교육과장 및 학생맞춤협력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 또는 장학관으로 보한다

⑤ 학교생활교육과장-----
-----.

1. 교육활동보호 업무 총괄·기획

<삭 제>

<삭 제>

6. ~ 8. (현행과 같음)

9. 학생인권 교육 및 -----

<삭 제>

11. (현행과 같음)

<삭 제>

13. 교육활동 침해사안 상담 및 행정심판, 소송에 관한 사항

14. 교육활동보호 법률지원·전담변호사 운영

15. 지역 교권보호위원회 구성·운영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④ 교육협력복지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 설>

1. ~ 14. (생 략)

15. 초·중학교 교과서 수급관리

16. ~ 18. (생 략)

⑤ 초등교육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 16. (생 략)

<신 설>

<신 설>

⑥ (생 략)

제59조(행정지원국) ① 행정지원

16.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조사·대응

17.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지원

18. 생활교육위원회 운영 지원

19. 생활교육 지원단 및 생활교육법률지원단 운영

20. 지역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운영

⑥ 학생맞춤협력과장-----
-----.

1.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운영

2. ~ 15. (현행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와 같음)

<삭 제>

17. ~ 19. (현행 제16호부터 제18호까지와 같음)

③ -----
-----.

1. ~ 16. (현행과 같음)

17. 유보통합 교육과정 업무에 관한 사항

18.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현행 제6항과 같음)

제59조(행정지원국) ① -----

국에 행정지원과, 재정지원과, 평생교육건강과 및 학교시설지원과를 둔다.

② 행정지원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재정지원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평생교육건강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학교시설지원과장은 지방기술서기관이나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생략)

<신설>

--- 행정지원과, 학교통합지원과-----
-----.

② 행정지원과장, 학교통합지원과장 및 -----

----- 지방공업사무관 -----

③ (현행과 같음)

④ 학교통합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활동·행정지원 업무 총괄·기획
2. 학교통합지원에 관한 사항 및 콜센터 운영
3. 학교지원업무 발굴 및 모니터링
4. 학교인력채용 지원에 관한 사항
5. 교원 정기승급 및 호봉 확정에 관한 사항
6. 교과서 수급관리
7. 교육공무직원의 인사노무관리

④ 재정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 6. (생략) 7. <u>재해예방에 관한 사항</u> 8. (생략) 9. <u>어린이 등하굣길(통학로) 교통안전 사업</u> 10. <u>통학버스 운영지원 및 안전 점검(학원 제외)</u> 11. <u>학교 CCTV 관리 지원</u> 12. <u>산업안전보건 및 중대재해 예방 업무지원</u> 13. ~ 18. (생략) 19. <u>교육공무직원의 인사노무 관리</u> <신설> ⑤·⑥ (생략)	8. <u>재난관리에 관한 사항</u> 9. <u>등하굣길(통학로) 교통안전 사업</u> 10. <u>통학버스 운영지원 및 안전 점검(학원 제외)</u> 11. <u>학교 CCTV 관리 지원</u> 12. <u>산업안전보건 및 중대재해 업무지원</u> 13. <u>그 밖의 학교행정업무 경감에 관한 사항</u> ⑤ ----- -----. 1. ~ 6. (현행과 같음) <삭제> 8. (현행과 같음) <삭제> <삭제> <삭제> <삭제> 13. ~ 18. (현행과 같음) <삭제> 20. <u>유보통합 행·재정 업무에 관한 사항</u> ⑥·⑦(현행 제5항 및 제6항과 같음)
--	---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의견 제출

성 명 : (인) (단체인 경우) 단체명 : 대표자 성 명 :
주 소 : 전화번호 :

개정안	수정요구안	사 유
제0조(00)	제0조(00)	○ -

2025년 5월 일



기관의 장	
선	
람	

공 람									